

월간
재정포럼

2019. April_Vol.274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4

권두칼럼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의 재정정보 관리 | 이원희

현안분석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 김문정

집군분석을 이용한 납세자 행태분석 -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 권성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외

CONTENTS

권두칼럼

-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의 재정정보 관리 **02**
| 이원희

현안분석

-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06**
| 김문정
- 집근분석을 이용한 납세자 행태분석 -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20**
| 권성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 -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외 **40**

정책흐름

-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84**
-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겨냥한 적극적 재정 운영 **89**
- 4대 자원배분 중점,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집중 투자 -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의 재정정보 관리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 발전 초기, 한국경제가 몇몇 주요 국책사업에 집중하여 재정을 관리 하던 시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재정 관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결정 과정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산배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공유재로 인식하고 서로 먼저 차지하려는 정치력의 대상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국책사업들은 복잡한 인과 관계 속에서 집행되고 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관리하지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이 연계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미세먼지·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인적 자원 개발정책,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등은 한두 가지의 사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업들의 포트폴리오와 논리적 연계망의 설계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주제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경제학의 각종 분석 모형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관리 방식

경제학의 도전은 현실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농업혁명, 기계혁명, 컴퓨터혁명을 넘어서 이제 사물인터넷에 의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은 말 그대로 IoT(Internet of Things)라는 관점에서 사람, 사물, 정보 등을 연계한다. 수백 개의 제품이 연결되어 서비스(Smart

Connected Service)를 제공하고 그것이 블록체인에 결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와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Deep Blue)와의 게임에서 인간이 패배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6년 바둑 천재 이세돌과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와의 경기에서 인간의 연이은 패배가 있었다. 그리고 1년 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인 리브라투스(Libratus)와 인간과의 포커 게임에서도 인간이 완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인간의 패배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기술을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석을 보완하고 예측하도록 활용하면 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법,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리의 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2018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5G 스마트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속도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범위와 연계망의 설계가 달라진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시장의 생태계를 바꿀 것이고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재정정보의 자동 관리 장치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 관리 방식 그리고 인간 삶의 변화 속도에 따라 공공부문도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공공부문에서도 팍테크(PubTech)의 영역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관리방식이 개인이나 개별 사례에 근거한 점 관리 모형(point management model)이었다면, 이제는 공간 관리 모형(space management model)의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접근에서 더 나아가 제기된 민원이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해석되면, 정책 수요가 된다. 그래서 개별 민원이 제도를 바꾸는 정책 개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국가정책사업들은
 복잡한 사업들의
 포트폴리오와 논리적
 연계망의 설계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주제들이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법,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리의
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질 수 있다.

복잡성이 증대되고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환경에서 기술과 데이터 분석 사용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회계 및 재정통계 관리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부문의 미래 예측, 리스크 관리와 대응을 고도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부문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증대, 나아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능정보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면 새로운 공공 관리의 논리(logic)와 규칙(rule)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숫자로 채워져 있는 재정부문에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더욱 중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재정 수요가 추출될 것이고, 이는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거가 될 것이다. 지금은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라는 인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유사성을 찾는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면 새로운 유형화와 규칙성을 추출할 수 있다.

가스레인을 밖에서 원격으로 켤 수 있지만, 해킹이 가능하면 엄청난 위험과 사고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의 해킹이 발생한다면 더 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공서비스의 관리방식, 재정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김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집군분석을 이용한 납세자 행태분석 -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¹⁾

I. 서론

단시간 근로자들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6%에서 2018년에는 19.42%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²⁾ 특히 주 15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 역시 동 기간 2.05%에서 4.08%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단순히 기존 주 40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 줄어든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 증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시간 근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이 이질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증대 등의 목적으로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로가 가능하지 않되 경력단절을 피하고 싶은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높고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근로자 등은 단시간 일자리를 통하여 (전일제 대비) 더 높은 효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들 중에서 자발적(혹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단시간 근로 비중의 증가 추세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시간 근로자는 대체로 전일제 근로자와 근로시간, 고용형태, 임금형태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표준적인’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moonkim@kipf.re.kr)

1) 본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업무회의 및 「2018년 10월 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이다. 익명의 논평자를 비롯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고의 모든 오류사항은 저자의 책임이다.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IDA7011S&conn_path=I3, 접속일: 2018년 4월 4일)

혹은 ‘전형적인’ 일자리 모형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³⁾

단시간 근로자별 맞춤형 정책 추진, 혹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노동 시장 정책 수립 차원 등의 측면에서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자들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고, 단시간 근로자 증가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을 검토하며, 나아가 정책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II. 단시간 근로자 정의

1. 단시간 근로자의 법적 정의 검토⁴⁾

먼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정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절대적 근로시간 임계치 대신 상대적 개념으로서 ‘단시간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9항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한다.⁵⁾ 여기에서 ‘소정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⁶⁾

이상의 정의에서 ‘단시간 근로자’ 범주가 해당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의 소정시간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정의하고, 그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단시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⁷⁾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대비(혹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 대비)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은 별도의 시행령을 통하여 정해진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2010년 7월 12일자)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임금의 계산, 초과 근로, 휴일·휴가 적용 원칙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의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9항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한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와 다른 형태의 비정규 근로자 증가 현상과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단시간 근로자를 둘러싼 법적 접근에 대해서는 유준석(2013), 박귀천(2018a; 2018b)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chrClsCd=010202&mode=20#>, 검색일자: 2018. 10. 18.

6) 올해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이를 넘어가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7)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 2014. 9.

통계분석 목적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들의 정의는 보통 ‘주당 30시간 혹은 35시간 이하 근로자들’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자를 통상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초단 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컨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제55조 관련), 소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제60조 관련).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자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⁸⁾

2. 단시간 근로자의 통계적 정의

앞서 언급한 법정 정의에 기반하여 단시간 근로자를 정의하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각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이러한 전수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단시간 근로자 규모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할 때는 일정 수준(컷오프, cutoff) 이하의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곤 한다.

통상적으로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곤 하는데, 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구분’ 항목에 근로자들을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1~35시간, 36시간 이상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후, 1~35시간이라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도 컷오프 방식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정의하였고, 컷오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은 활용하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물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대체적인 정의를 함께 고려하여 단시간 노동의 데이터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황수경(2004)의 경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40시간 미만 일한 임시직 근로자, 평소 36시간 미만 근로자이거나 40시간 미만 임시직 근로자 등의 다양한 정의를 검토

8) 박귀천(2018a)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균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 데이터 관찰시점 기준 평균 근로시간 대비 더 짧은 근로시간을 갖는 근로자들로 단시간 근로자들을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 이러한 다양한 정의에 기반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III. 단시간 근로자들의 규모 및 증가 추세

본 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규모 및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들이 상당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패턴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OECD 회원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및 단시간 근로자 비중의 통계량을 살펴본다.¹⁰⁾

1. 단시간 근로자들의 규모

먼저 [그림 1]에서는 1980~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조사」를 이용하여 시간별 취업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53시간 초과 취업자(more than 53 hours)는 1980~1991년 동안 변동은 있었지만, 1981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전체 취업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에 39.67%까지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직후,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1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2014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less than 18 hours)은 1980~1997년에 2% 미만이었다가 1998년 이후부터 증가하여 2017년에는 5%에 이른다. 절대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 시간에 따른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의 변동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의 변동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의 변동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후부터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이 늘고,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이 줄어든 것을 통하여 동일 기간 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줄었을 것으로

**1980~2018년 동일
기간에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은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의 변화
양상과 대체로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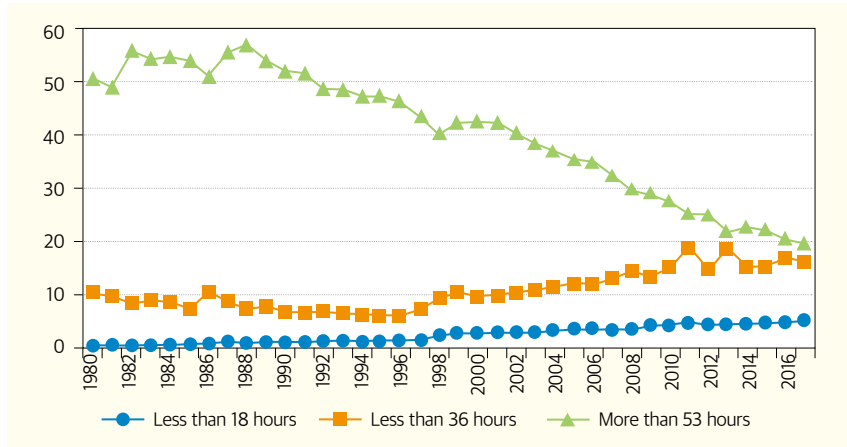
9) 이러한 방식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계열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단시간 근로자들의 상대적 비중 추이를 활용할 때 이러한 정의가 더 적합할 수 있다.

10) 단, 제III장의 기초통계량에서는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36시간 미만 근무자'라는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

시간에 따른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의 변동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의 변동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의 변동성과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림 1] 시간별 근로자 비중: 198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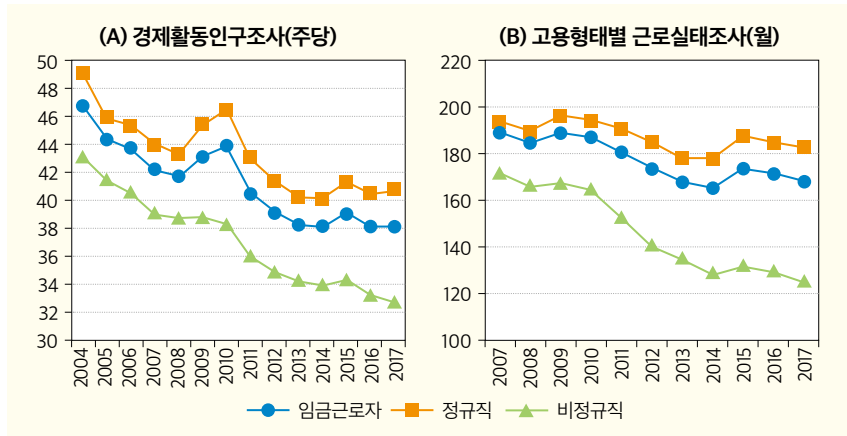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취업자 대비 18시간 미만 취업자, 36시간 미만 취업자,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율을 나타냄
출처: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시간별 취업자, 검색일자: 2018. 10. 10.

[그림 2] 근로시간 변화 양상

(단위: 시간)



출처: (A)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근로형태별/주당 평균취업시간 및 증감
(B) KOSIS,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11) 경찰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간의 근로시간 변화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두 데이터의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방식, 표본추출 방식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를 통해 이러한 예상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하, 경찰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관찰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을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보여주고 있다.¹¹⁾

[그림 2]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감소분은 데이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경향부가조사([그림 2]의 (a))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7~2017년 동안 9.7% 감소한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그림 2]의 (b))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동일 기간 10.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평균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짧으며, 이러한 현상은 데이터나 시점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내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체로 2004~2017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0년 이후 그 감소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2015년에 다소 상승했다가 2015~2017년에 2010~2015년과 유사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특정 시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경기적 요인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2004년 대비 2017년 기간에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단조적(monotonic)이지 않다. 특히 2008~2010년에는 근로시간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기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정규직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채널 중의 하나로서, 경기불황으로 고용 규모가 축소된 결과 기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증가가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과는 구분되며, 단시간 일자리라는 일자리 형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 실행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 반면, 단시간 근로자들은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의 직접적 영향군이 아니므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요인과 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는 요인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정규직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상황에 따른 고용규모가 축소함에 따라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고용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이 오래
전부터 경험해 온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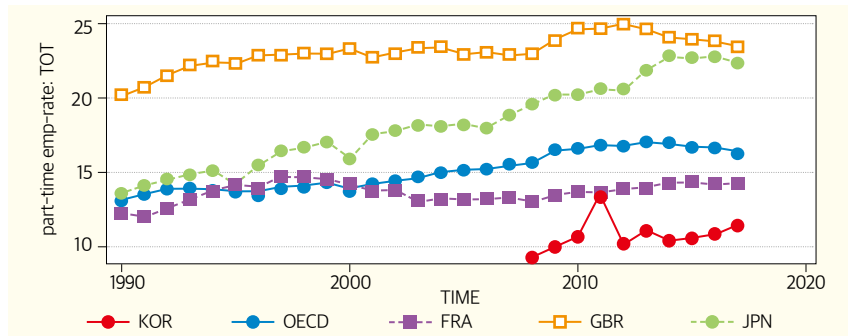
2. 해외 국가와의 비교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이 오래 전부터 경험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림 3]은 OECD 평균(OECD), 프랑스(FRA), 독일(GBR), 일본(JPN), 우리나라(KOR)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 데이터는 2000년대 후반부터 OECD 데이터베이스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사실 1990년부터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줄곧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다른 비교 국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OECD 평균의 경우 2017년 기준 약 17%, 일본은 약 22%, 독일은 23%, 프랑스는 14%가량인 반면, 우리나라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13%가 채 되지 않는다. 국가별 변화 양상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1990년 14%에서 2017년 22%가량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OECD 평균치와 독일의 경우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그 증가율은 일본에 비해서는 완만한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1990년 후반에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15%에 도달한 이후부터 2010년 정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조금씩 증가하거나 정체된 상태이다.

[그림 3]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

(단위: %)



주: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s)는 주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일을 하는 근로자로 정의됨. 피고용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설문조사 기간 전 주에 적어도 수입을 근거로 1시간 일을 했던 경우나, 직장(일)이 있었지만 설문조사 기간 전 주에 휴직/휴가였던 경우로 정의됨.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값. 단시간 근로자는 전체 피고용인 중에서 3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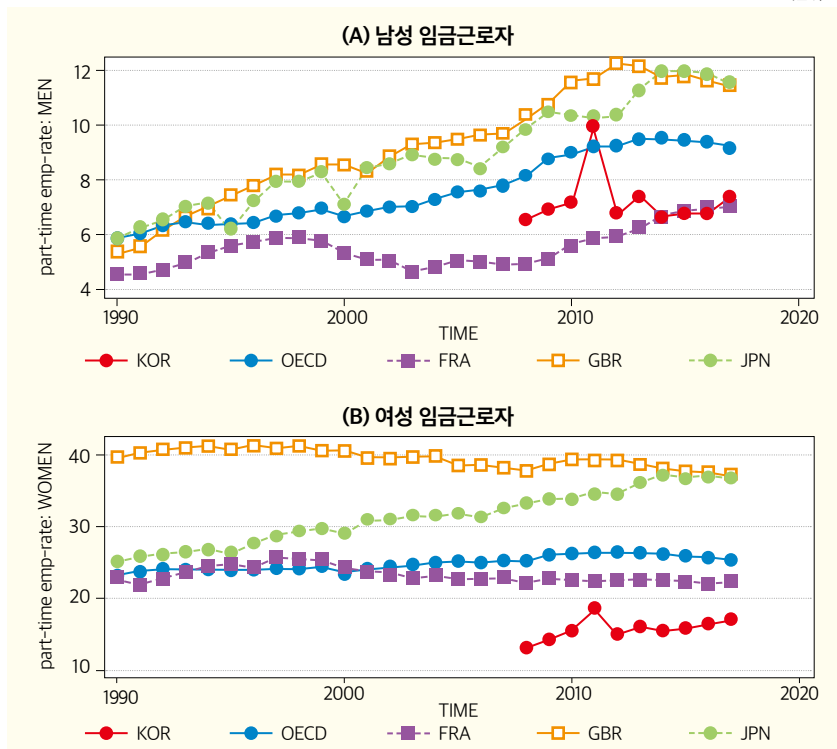
출처: OECD, Part-time employment rate (indicator), 2018. doi: 10.1787/f2ad596c-en (Accessed on 7 October 2018)

[그림 4]에서 우리나라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은 주로 여성 근로자들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낮기 때문임을 추측하게 한다. 남성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프랑스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에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다른 국가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 내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017년 기준 OECD 평균인 대략 25%에 비해 17~18%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은
주로 여성 근로자들의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그림 4]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성별 임금근로자 구분

(단위: %)



주: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s)는 주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일을 하는 근로자로 정의됨. 피고용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설문조사 기간 전 주에 적어도 수입을 근거로 1시간 일을 했던 경우나, 직장(일)이 있었지만 설문조사 기간 전 주에 휴직/휴가였던 경우로 정의됨.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값. 단시간 근로자는 전체 피고용인 중에서 3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정의

출처: OECD, Part-time employment rate (indicator), 2018. doi: 10.1787/f2ad596c-en (Accessed on 7 October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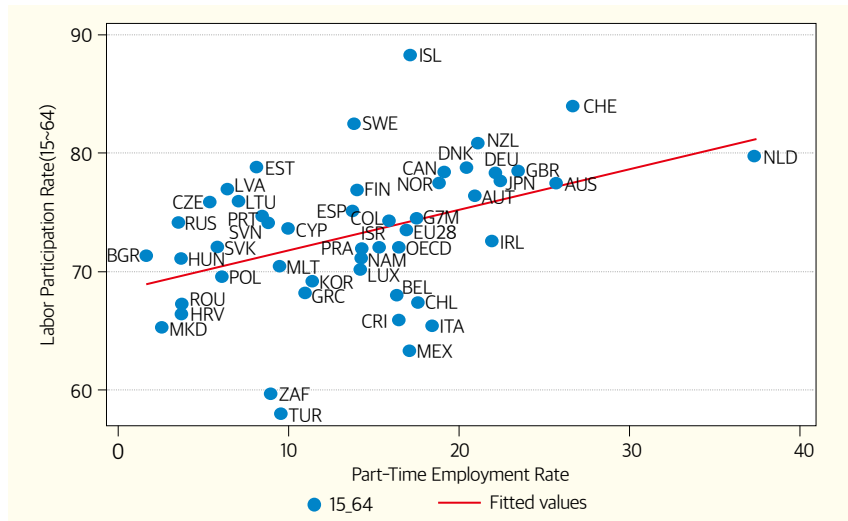
2013년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 내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7년 기준 OECD 평균인 대략 25%에 비해 17~18%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데다가 여성 임금근로자 내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 역시 낮기 때문에, 그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비교 유럽국가의 경우 단시간 노동의 기회가 많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 수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경제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5]는 이러한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 [그림 5]의 가로축은 30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비중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15~64세 사이 인구에서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준다. 30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비중이 클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의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장려하고, 일자리 쪼개기를 통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단시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림 5] 단시간(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과 노동시장 참여율(15~64세): 2017년

(단위: %)



IV.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 메커니즘 검토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게 된 메커니즘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가? <표 1>에서는 단시간 노동이 증가하게 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노동수요, 노동공급, 노동시장 제도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수요 요인으로 먼저 기업이 노동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단시간 노동자를 늘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각종 수당이나 사회보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장 경쟁의 생태계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노사관계 및 근로계약의 형태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투자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향상하여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만으로 사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가 존재하는 시간에만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특정 시간대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더 선호하게 된다.

단시간 일자리 증가 메커니즘은 노동수요, 노동공급, 노동시장 제도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 단시간 근로 증가 메커니즘

구분	단시간 근로 증가 추세 요인(가설)
노동수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비용 절감 노력 • 자본투자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 시장시장생태계 변화(gig economy)
노동공급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 욕구 • 노동시장 참여 가구원 구성 변화 • 여성노동참여 증가
제도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 • 최저임금 •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쪼개기 • 직접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노동공급 요인을 검토해보자. 먼저 일·가정 양립 욕구로 인하여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양육·교육 측면의 부담이 높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림 5]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비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선명한 정(+)¹²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단시간 근로 기회가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가 은퇴하거나 가구주가 전일제 일자리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가구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비교적 시장 진입이 용이한 단시간 일자리를 얻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측면을 검토해 보자. 근로장려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 직접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제도 및 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시간 일자리 확대 결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복지제도인데,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이 한계적으로(marginally) 늘어날 때 근로장려금 금액이 늘어나거나(점증구간), 그대로이거나(평탄구간), 줄어들게 된다(점감구간). 잠재적인 근로장려금 대상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경제활동 상태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근로소득이 점증·평탄·점감 구간 중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다소 조정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시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할 수 있다.¹²⁾

최저임금이 인상되거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각 정책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단시간 일자리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노동사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기업이 장·단기적으로 노동수요를 줄이려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업은 기술발전, 무역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접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 (광의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도 단시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취약계층에 ‘노동을 통한 복지’ 차원에서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경험의 기회를 쌓고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굳이 전일제 일자리를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일 가정 양립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시간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 노동수요, 노동공급, 노동시장 제도 관점에서 단시간 근로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만한 요인들을 검토해 보았다. 본절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증가 메커니즘을 편의상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

12) 송헌재·전영준(2011)에서도 근로장려금 도입에 대한 정책시뮬레이션 수행결과, 전일제 근로를 줄이고 단시간 근로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결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적 조치는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노동수요 축소 유인을 강화(노동수요 요인)시키거나 근로자들의 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다(노동공급 요인).

V. 결론 및 정책 함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80~2017년 동안 53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현저하게 줄고, 동 기간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OECD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볼 때, 이들 주요국에서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2010년 이후 점차 줄어든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해당 해외 국가에서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할 여력이 제한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 시점 기준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낮았기에 추가적으로 높아질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낮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단시간 근로자 비중과 경제활동 참가율 간에 뚜렷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통해 단시간 근로 기회가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가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데이터를 통해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질성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시간 일자리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계약관계, 임금형태 등의 측면에서 전일제 일자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전형적이거나 표준적인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질성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고용 안전망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이질성이 확대되는 경우, 무엇보다 기존의 고용안전망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표준적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는 반면,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안전망 점검작업과 더불어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정책 간 연계성을 적절히 도모하거나,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정책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함께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 증가추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불완전고용 상황에 직면한 단시간 일자리 근로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잠재적인 임금소득을 “고용기회×시간당 임금×근로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임금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고용기회를 늘리고 시간당 노동보상을 높이는 것 외에도 (주어진 임금률하에서) ‘충분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포함하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기회,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특정 노동시장 정책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각 요소별 반응이 어떠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주, 「영국의 단시간근로 현황과 문제점」 『국제노동브리프』, 제11권, 제8호, 2013, pp. 44~52.

김종욱, 「고용통계 인구 보정 전후 비교」,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8, pp. 57~69.

박귀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쟁점」,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8a, pp. 23~30.

_____,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쟁점 및 향후 논의 사항」,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8b, pp. 34~44.

송헌재·전영준,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유준석, 「단시간근로에 대한 운영상의 쟁점 연구」, 『노동연구』, 제25집, 한국노동

연구원, 2013, pp. 119~172.

황수경, 『단시간 근로자와 여성인력 활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

Garnero, Andrea, Stephan Kampelmann and Francois Rycx, “Part-time work, wages, and productivity: evidence from Belgian matched panel data,” *ILR Review*, 67(3), 2014, pp. 926-954.

Hall, Jonathan V., and Alan B. Krueger,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s driver-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ILR Review* 71(3), 2018, pp. 705-732.

Kyyrä, Tomi, José María Arranz, and Carlos Garca-Serrano, “Does Part-Time Work Help Unemployed Workers to Find Full-Time Work? Evidence from Spain,” *IZA Discussion Papers*, No. 10770, 2017.

Mokyr, Joel, Chris Vickers, and Nicolas L. Ziebarth, “The history of technological anxiety and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s this time differ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2015, pp. 31-50.

OECD,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2018*, 2018.

Valletta, Robert, Leila Bengali, and Catherine Van der List, *Cyclical and Market Determinants of Involuntary Part-time Employment*, 2016.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_____,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 20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index/index.do>.

집군분석을 이용한 납세자 행태분석 -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I. 서론

집군분석(bunching analysis)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와 같이 경제적 유인이 계단식으로 변하는 경우 경제주체가 그로 인한 보상 혹은 처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한다. 경계점 부근에 경제주체가 몰리는 현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집군분석이라고 불린다. Saez(2010)가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행동 반응을 연구한 이후 연금, 건강보험, 자동차 연비 규제정책 등 광범위한 주제에 집군분석이 활용되고 있다(Manoli and Weber, 2016; Einav, Finkelstein and Schrimpf, 2017; Ito and Sallee, 2018). 다만 분석의 대상이 경계점 부근의 경제주체로 한정되기 때문에 행정 미시자료가 이용 가능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아직까지 국내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

본 연구는 집군이론과 실증분석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론을 종합소득세 자료에 적용하여 세율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주체는 세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공급 조절, 절세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후생분석, 세수추계, 세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로 인한 납세자의 행태변화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후생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Saez, Slemrod and Giertz, 2012). 집군분석은 납세자들의 행태변화를 포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세율 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eficiency cost)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세수추계 및 세부담 분석을 위해서도 납세 행태변화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세제개편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할 때 과세소득 분포가 이전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면 과세소득 탄력성이 높은 경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okwon@kipf.re.kr)

우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업종 등 납세자의 특성별로 납세 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세정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집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계세율이 6%에서 12%로 증가하는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에서 집근이 나타난다. 집근은 사업소득자에게 나타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노동시간 조절과 조세회피를 통해 세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과 일치한다(Chetty et al., 2011). 과세표준 1,200만원 이외의 경계점에서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Saez(2010)와 Chetty et al.(2011)이 고안한 집근이론 및 실증분석법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국세 미시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제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II. 집근분석과 납세 행태

<표 1>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누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¹⁾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2015년과 2016년 귀속연도에는 다섯 개의 과표구간에 6~38%의 세율이 적용됐다. 누진적 과세제도하의 납세자들은 과세표준을 세율이 증가하는 경계점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자 등 각종 공제액을 늘려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계점 우측에 위치한 납세자들이 경계점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면 집근이 나타나게 된다.

집근분석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와 같이 경제적 유인이 계단식으로 변하는 경우 경제주체가 그로 인한 보상 혹은 처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집근이론과 실증분석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론을 종합소득세 자료에 적용하여 세율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누진적 과세제도하의 납세자들은 과세표준을 세율이 증가하는 경계점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표 1> 종합소득세 세율: 2014~2016년 귀속

(단위: 만원, %)

과세표준	세율
1,200 이하	6
1,200 초과 4,600 이하	15
4,600 초과 8,800 이하	24
8,800 초과 15,000 이하	35
15,000 초과	38

출처: 저자 작성

집군이 형성되는 과정을 더 엄밀히 설명하기 위해 식 (1)과 같은 효용함수를 고려해보자.

$$u(z-T(z), z/n) \tag{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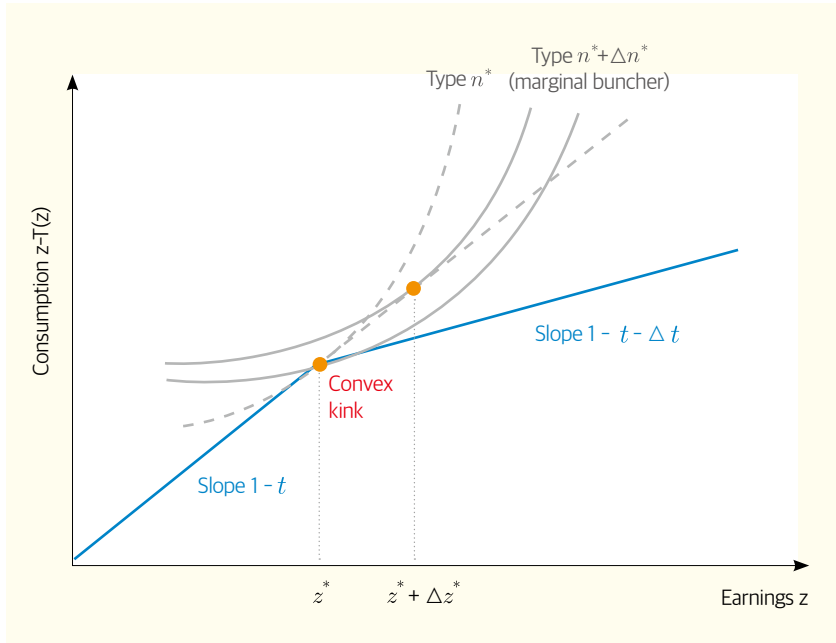
개인의 효용은 세후 소득과 세전 소득의 함수이다. 세후 소득과 세전 소득은 각각 소비의 가치와 노력의 비용을 반영한다. 개인의 소득 z 는 선호(preference)와 능력 n 에 달려 있고 매끈한 밀도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먼저 소득에 상관없이 t 의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단순한 선형 조세제도(linear tax system)를 고려해보자.²⁾ 이 경우 납세자들은 기울기가 $1-t$ 인 선형의 예산선 위의 한 점에서 최적 선택을 하게 된다([그림 1] 참고). 예를 들어, n^* 의 능력을 가진 납세자는 소득 z^* 를 선택하고, $n^* + \Delta n^*$ 의 능력을 가진 납세자는 소득 $z^* + \Delta z^*$ 를 선택한다.

이제 소득에 따라 두 가지의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가정해보자. z^* 이하의 소득에는 이전과 같이 t 의 한계세율이 부과되지만, z^* 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t + \Delta t$ 의 한계세율이 부과된다. 이 경우 납세자들은 [그림 1]의 파란 실선과 같은 구분적 선형 예산집합(piece-wise linear and convex budgets)을 갖게 된다. 단순한 선형 조세제도하에서 소득이 z^* 이하인 납세자들은 이전과 같은 소득을 선택하게 되지만, 소득이 z^* 보다 조금 더 많은 납세자들은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n^* + \Delta n^*$ 의 능력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제도 변화 전에는 $z^* + \Delta z^*$ 가 최적 소득이지만 제도 변화 후에는 z^* 가 최적 소득이 된다.

2) $T(z)=t \cdot z$

[그림 1] 무차별곡선과 집군



출처: Kleven, 2016, p. 439, Figure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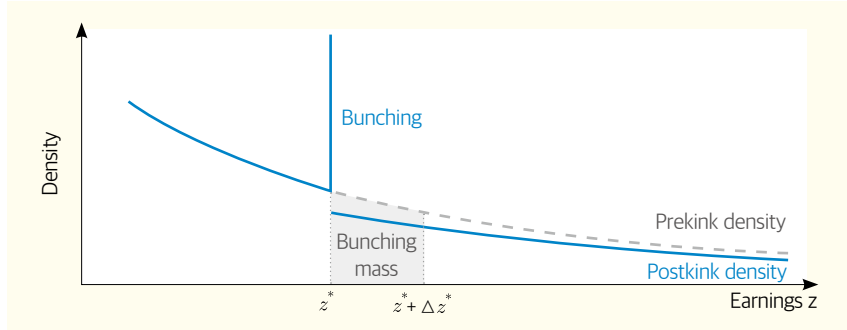
능력이 $n^* + \Delta n^*$ 인 납세자를 한계집군개인(marginal bunching individual)이라고 가정하면, 제도 변화 전에 z^* 와 $z^* + \Delta z^*$ 사이에 위치하던 납세자들은 구분적 예산집합하에서 모두 z^* 로 이동하게 된다.³⁾ 결국 [그림 2]와 같이 한계세율이 변하는 z^* 에서 집군이 나타나고, 집군의 정도 B는 $\int_{z^*}^{z^* + \Delta z^*} h_0(z) dz$ 로 정의할 수 있다. $h_0(z)$ 는 단순한 선형 조세제도하의 소득분포를 보여주는 반사실적 밀도(counterfactual density)를 지칭한다.

능력이 $n^* + \Delta n^*$ 인 납세자를 한계집군개인이라고 가정하면, 제도 변화 전에 z^* 와 $z^* + \Delta z^*$ 사이에 위치하던 납세자들은 구분적 예산집합하에서 모두 z^* 로 이동하게 된다.

3) 제도 변화 전에 소득이 z^* 를 초과하던 납세자들은 더 높은 한계세율에 대응하여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분포도의 z^* 지점 바로 위에서 구멍(hole)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납세자들이 소득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집군은 정확히 경계선 위에 나타나기보다는 경계선 부근에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2] 밀도함수와 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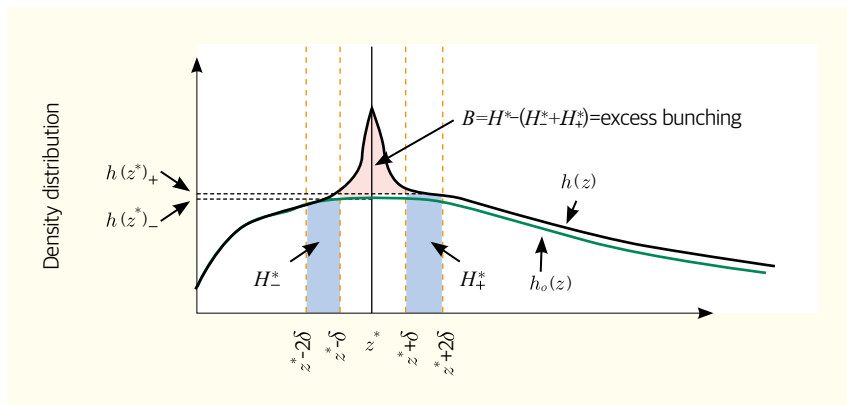


출처: Kleven, 2016, p. 439, Figure 1b.

납세자들이 소득을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금융소득이나 연말 상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집군은 [그림 2]처럼 정확히 경계선 위에 나타나기보다는 [그림 3]과 같이 경계선 부근에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계선 좌우로 집군이 나타나는 경우 집군의 정도는 식 (2)와 같이 측정할 수 있다(Saez, 2010).

$$B = \int_{z^*-\delta}^{z^*+\delta} h(z) dz - \int_{z^*-2\delta}^{z^*-\delta} h(z) dz - \int_{z^*+\delta}^{z^*+2\delta} h(z) dz \quad \text{식 (2)}$$

[그림 3] 집군의 정도 측정



출처: Saez, 2010, p. 188, Figure 2.

이 추정법의 문제는 모수 δ 의 선택에 따라 B의 추정값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δ 를 작게 설정하면 집근의 정도를 과소추정하게 되고, δ 를 크게 설정하면 $h_0(z)$ 의 곡면성(curvature) 때문에 발생하는 편향(bias)도 커지게 된다. Chetty et al.(2011)은 곡면성 편향을 정정하기 위해 외삽법(extrapolation)을 사용한다. 과세표준의 분포를 다항식으로 추정하여 경계점 주변에서 세율 인상이 없었을 경우의 반사실적 분포(counterfactual distribution)를 예측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관측치에 대해 특정 경계점 대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것을 경계점을 중심으로 100여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각 경계점에 대해 경계점을 포함하는 구간과 그 좌우에 각각 50개씩 총 101개의 구간을 만든다. 이때 구간의 크기는 20만원으로 한다. 구간 j 에 속하는 납세자의 수와 경계점 대비 과세표준을 각각 C_j 와 Z_j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식 (3)을 추정한다.

$$C_j = \sum_{i=0}^p \beta_i (Z_j)^i + \sum_{i=-R}^R \gamma_i \cdot 1[Z_j = i] + v_j \quad \text{식 (3)}$$

p 는 다항식의 차수를 의미한다. $[-R, R]$ 은 다항식 추정에서 제외되는 영역으로 히스토그램에서 관측되는 집근을 포함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계점 주변의 반사실적 분포 \hat{C}_j 는 식 (3)을 통해 구한 예측값(predicted value)에서 $[-R, R]$ 에 속하는 터미변수들이 기여하는 바를 제외하여 추정한다.⁴⁾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hat{C}_j = \sum_{i=0}^p \hat{\beta}_i (Z_j)^i \quad \text{식 (4)}$$

이때 집근의 정도 \hat{b} 는 식 (5)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hat{b} 는 경계점 주변에 납세자가 얼마나 몰리는지를 반사실적 분포의 평균 빈도수에 대비해 측정한다.

$$\hat{b} = \frac{\sum_{j=-R}^R (C_j - \hat{C}_j)}{\sum_{j=-R}^R \hat{C}_j / (2R + 1)} \quad \text{식 (5)}$$

Chetty et al.(2011)은 곡면성 편향을 정정하기 위해 외삽법을 사용한다. 과세표준의 분포를 다항식으로 추정하여 경계점 주변에서 세율 인상이 없었을 경우의 반사실적 분포를 예측한다.

4) Chetty et al.(2011)은 반사실적 분포 아래의 면적과 실제 분포 아래의 면적이 같도록 반사실적 분포의 위치를 조정한다.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매개변수화된
준선형 등탄력적
효용함수를 가정한다.

이제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매개변수화(parametrized)된 준선형 등탄력적 효용함수(a quasi-linear and isoelastic utility function)를 고려해보자(Saez, 2010).

$$u = z - T(z) - \frac{n}{1 + 1/e} \cdot \left(\frac{z}{n}\right)^{1 + 1/e} \quad \text{where } e = \frac{\Delta z^*/z^*}{\Delta t/(1-t)} \quad \text{식 (6)}$$

준선형 효용함수를 가정함으로써 보상탄력성과 비보상탄력성이 같게 되고, 등탄력성 가정으로 인해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은 상수인 e 가 된다. Saez(2010)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은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논의를 단순화한다. 선형 예산집합하에서 이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일계 조건은 식 (7)과 같다.

$$z = n(1-t)^e \quad \text{식 (7)}$$

앞에서 언급했듯이 $n^* + \Delta n^*$ 의 능력을 가진 납세자는 단순한 선형 예산 제약 선하에서 $z^* + \Delta z^*$ 의 소득을 선택하고, 이때 그의 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1-t$ 인 예산선에 접하게 된다: $z^* + \Delta z^* = n(1-t)^e$. 구분적 선형 예산집합하에서 동일한 납세자의 소득은 z^* 가 되고, 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1-t-\Delta t$ 인 예산선에 접하게 된다: $z^* = n(1-t-\Delta t)^e$. 이 조건들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 (8)을 도출할 수 있다.

$$\frac{z^* + \Delta z^*}{z^*} = \left(\frac{1-t}{1-t-\Delta t}\right)^e \quad \text{식 (8)}$$

식 (2)와 식 (8)을 활용하면 탄력성 e 를 관측할 수 있거나 실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⁵⁾

$$B = \int_{z^*}^{z^* + \Delta z^*} h_0(z) dz \approx z^* \left[\left(\frac{1-t}{1-t-\Delta t}\right)^e - 1 \right] \frac{h(z^*)_- + h(z^*)_+}{2} \left(\frac{1-t}{1-t-\Delta t}\right)^e \quad \text{식 (9)}$$

5) 구체적인 도출 과정은 Saez (2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계점 z^* 와 조세 비율 $(1-t)/(1-t-\Delta t)$ 은 관측가능한 모수이고, 집근의 정도를 지칭하는 B는 식 (2)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모수 δ 는 소득분포도에서 나타나는 집근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값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다수의 δ 를 선택해 민감도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z^*)$ 와 $h(z^*)_+$ 는 소득 z 가 z^* 로 근접할 때의 좌극한, 우극한을 지칭하는데, 각각 $(z^*-2\delta, z^*-\delta)$ 와 $(z^*+\delta, z^*+2\delta)$ 에 속하는 납세자의 비율을 δ 값으로 나눔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Chetty et al.(2011)이 제시한 집근 추정법을 이용할 경우 세율이 t 에서 $t+\Delta t$ 로 오르는 경계점 k 에 대한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은 식 (10)과 같다.⁶⁾

$$e = \frac{\hat{b}}{k \cdot \log\left(\frac{1-t}{1-t-\Delta t}\right)} \quad \text{식 (10)}$$

집근의 크기 혹은 탄력성을 추정할 때 그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주어진 표본에서 재표본을 반복해서 추출한 후 각각의 재표본에 상응하는 추정값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 추정값의 분포를 이용해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다.

집근분석이 인과관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만약 독립변수가 계단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종속변수의 분포는 매끈하고 집근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이토 코이치로, 2018, p. 140).⁷⁾ 종속변수의 반사실적 분포를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을 완전하게 입증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계점 이외에서는 종속변수의 분포가 매끈함을 보일 수 있다. 둘째, 경계점의 변화에 따라 집근도 그에 상응하게 변화하는지 보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유인을 결정하는 변수(예,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기반한 다른 정책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집근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도출된 결과를 경계점 부근에 있지 않은 경제주체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근분석은 경계점이 다수 존재하는 제도에 적용할 때 시사점이 크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경우 경계점이 소득 분포에 걸쳐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집근분석을 통해 다양한 소득 수준의 납세자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집근분석은 종종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과 비교된다.

집근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도출된 결과를 경계점 부근에 있지 않은 경제주체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근분석은 경계점이 다수 존재하는 제도에 적용할 때 시사점이 크다.

6) 이때 과세소득 탄력성은 구간의 크기를 단위로 표현된다.

7)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종합소득세의 한계세율이고 종속변수는 과세소득이다.

집군분석은 종종 회귀단절모형과 비교된다. 두 방법론 모두 경계점 부근의 경제주체를 분석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치효과를 식별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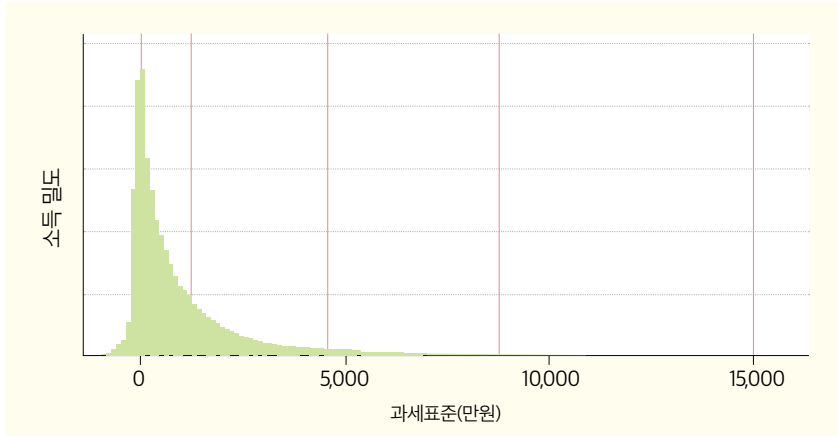
두 방법론 모두 경계점 부근의 경제주체를 분석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를 식별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집군분석은 경제주체가 경제적 유인을 결정하는 기준 변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경우 경계점 부근에 특정한 반사실적 분포를 가정하고 그것과 실제 관측되는 분포를 비교한다. 회귀단절모형은 경제주체가 기준 변수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 경계점 바로 위와 아래의 경제주체를 비교함으로써 처치효과를 추정한다.

Ⅲ. 국세 미시자료

본 연구는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정보를 연구자의 이용 목적에 맞도록 가공·정제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는 연구 시점에 이용 가능한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자료를 이용한다. 연구에 이용된 표본은 모집단에서 10%의 자료가 무작위 추출되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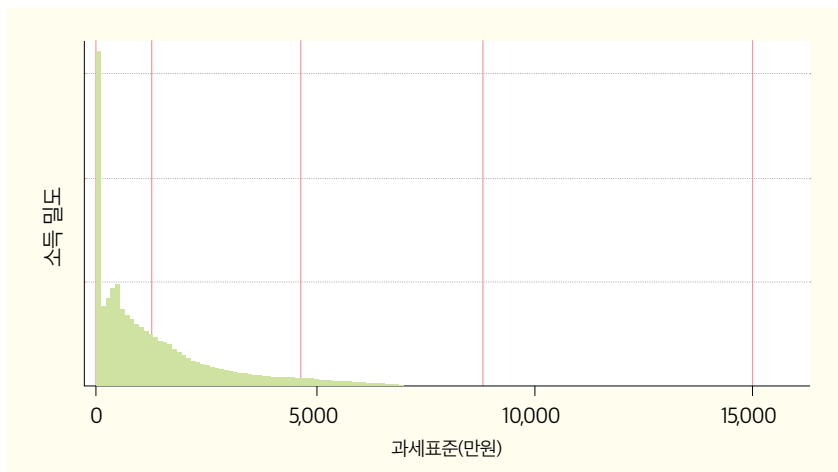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분포를 보여 준다. 해당 기간에 과표구간과 세율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명목값을 사용한다. 전체 표본을 이용해 히스토그램을 그릴 경우 이상치(outlier) 때문에 분포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표준 범위를 -1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제한하였다. 히스토그램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분포 모두 좌측으로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포가 여러 경계점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제IV장에서는 경계점 부근의 자료만을 이용한 분포를 제시한다.

[그림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분포



주: 종합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분포



주: 근로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표 2>와 <표 3>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소득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자료의 소득 변수 중 상당수가 음(-)의 값을 갖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수입금액은 양(+)의 값을 갖지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총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과세표준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단, 근로소득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는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정보를 연구자의 이용 목적에 맞도록 가공하되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는 최근 관련 문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Chetty et al.(2011)의 방법론을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변하는 경계점 주변에 집군이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집군의 정도를 활용하여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을 추정한다.

<표 2> 종합소득세 기술통계

(단위: 개, 만원)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총수입금액	1,250,425	15,657	61,218	0	21,851,612
사업소득	1,250,425	13,831	59,814	0	21,851,612
임대소득	1,250,425	553	3,907	0	756,878
근로소득	1,250,425	1,005	4,801	0	1,000,029
총소득금액	1,250,425	2,597	66,503	-73,141,808	3,003,072
사업소득	1,250,425	1,338	65,822	-73,141,807	1,928,648
임대소득	1,250,425	269	1,923	-101,720	399,695
근로소득	1,250,425	783	4,530	0	978,753
과세표준	1,250,425	2,225	12,024	-143,011	3,282,695

주: 종합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표 3> 근로소득세 기술통계

(단위: 개, 만원)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총수입금액	3,456,135	3,353	4,217	1,186,147
총소득금액	3,456,135	2,469	3,950	1,161,149
과세표준	3,456,135	1,795	3,644	1,158,038

주: 근로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IV.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최근 관련 문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Chetty et al.(2011)의 방법론을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변하는 경계점 주변에 집군이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집군의 정도를 활용하여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을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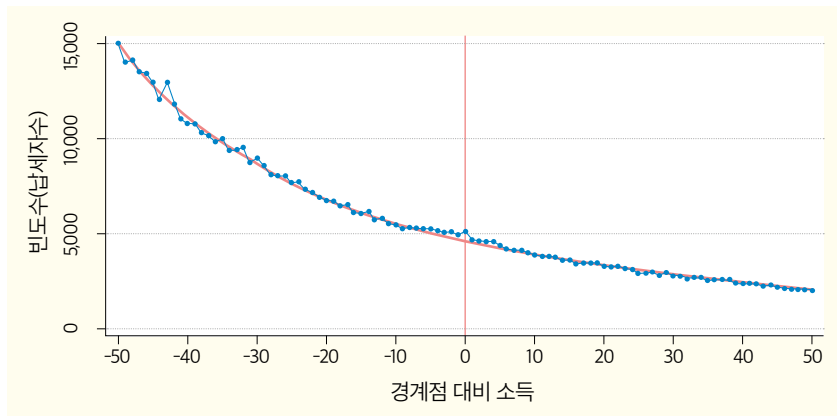
[그림 6]은 한계세율이 6%에서 12%로 인상되는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의 과세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각 관측치에 대해 경계점 대비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구간 크기가 20만원인 히스토그램을 생성했다. 파란 점들은 각 구간에 포함된 납세자의 수를 나타내고, 빨간 실선은 식 (3)과 식 (4)를 이용해 추정한 반사실적 분포를 나타낸다. 선행연구를 따라 다항식의 차수는 7로 설정했고($p=7$), 집군을 포

착하는 구간은 경계점 좌우에 7개씩 총 15개로 설정했다($R=7$). 분석 결과 추정된 반사실적 분포와 경계점 부근을 제외한 실제 분포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고, 집군의 크기는 0.65로 측정됐다. 이는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의 집군의 양(excess mass)이 같은 구간에 속하는 반사실적 분포의 평균 높이의 65%라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된 집군 \hat{b} 의 표준오차는 0.18이고, \hat{b} 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 (10)을 이용해 도출된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은 0.11이다. 이는 $1-t$ 가 1% 인상될 때 과세소득은 0.11% 인상됨을 뜻한다.

한계세율이 6%에서 12%로 증가하는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에서 집군이 나타난다. 집군의 크기에 기반해 추정된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은 0.11이다.

[그림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 분포

(단위: 이십만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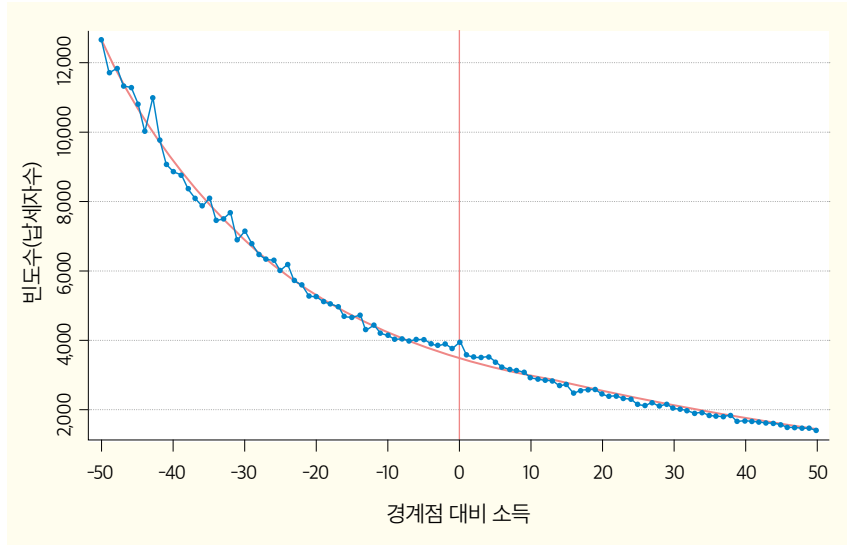
주: 종합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과 [그림 8]은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의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자료에서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양수인 납세자로 정의하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자료의 모든 납세자로 정의한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노동시간 및 필요경비 조절이 용이해 세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Chetty et al., 2011).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분포에 집군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사업소득자의 집군은 0.73으로 추정됐고, 이에 기반해 도출한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은 0.12로 나타났다([그림 7] 참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집군의 정도가 작고($\hat{b}=-0.03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그림 8] 참고).

집군은
사업소득자에게
나타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7]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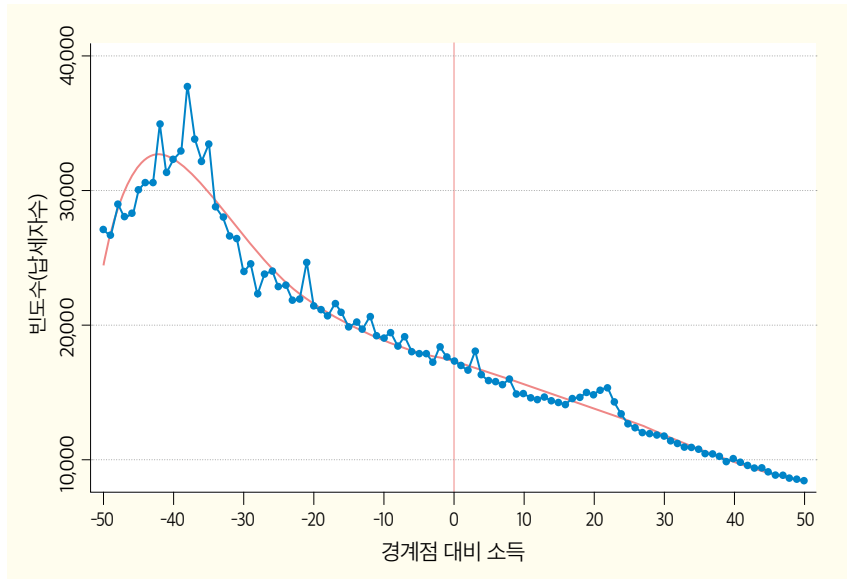
(단위: 이십만원, 명)



주: 종합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그림 8]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 분포

(단위: 이십만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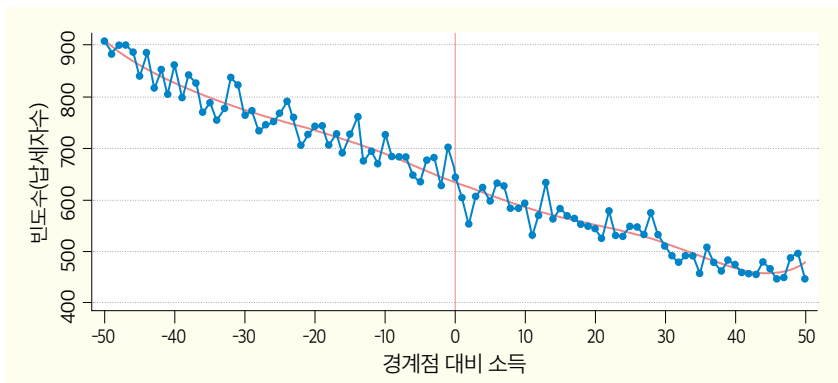
주: 근로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그림 9], [그림 10], [그림 11]은 각각 과세표준 4,600만원, 8,800만원, 1억 5,000만원 부근의 과세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추정된 다항식 분포와 실제 분포 사이의 격차가 점차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분석에 이용된 관측치의 수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분포의 변동폭이 큰 경우 측정된 집군이 세율 인상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추정된 다항식 분포와 실제 분포 사이의 격차가 점차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분석에 이용된 관측치의 수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분포의 변동폭이 큰 경우 측정된 집군이 세율 인상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림 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부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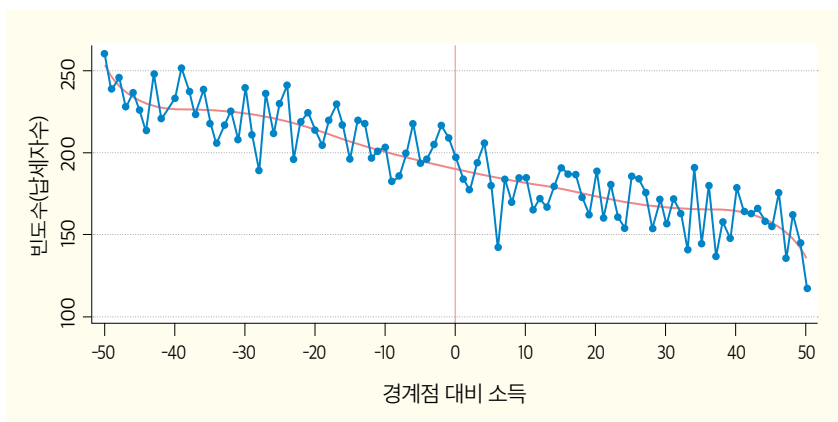
(단위: 이십만원, 명)



주: 종합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부근 분포

(단위: 이십만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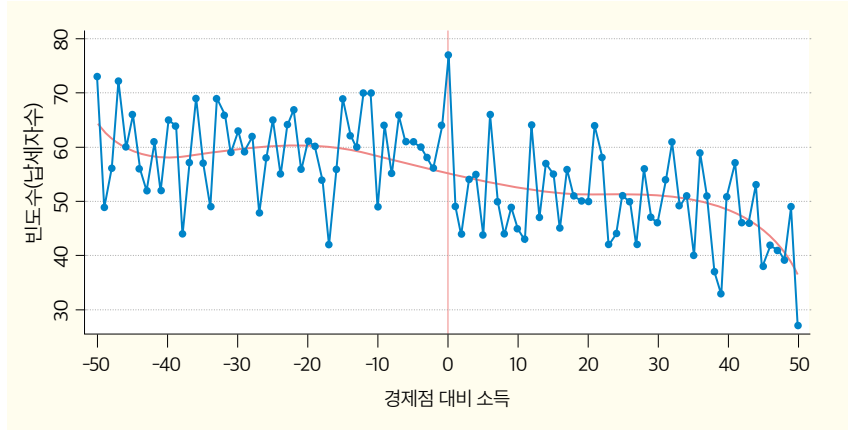


주: 종합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2]는 Chetty et al.(2011)이 덴마크의 근로소득자 과세자료를 이용해 수행한 집군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부근 분포

(단위: 이십만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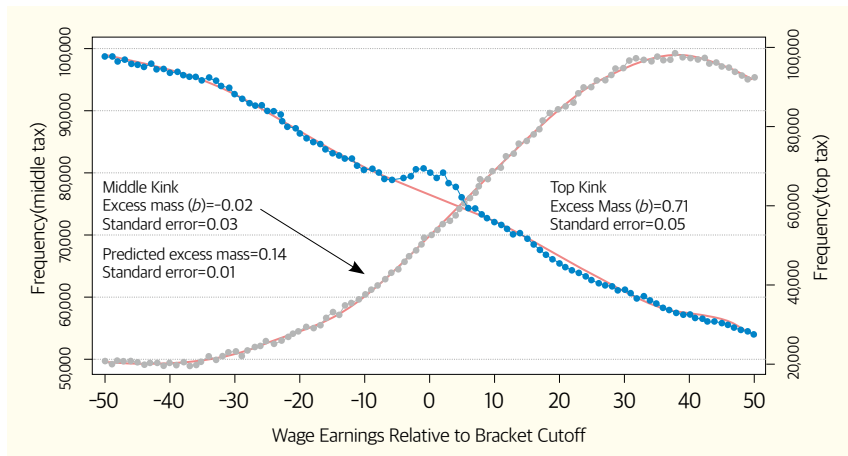


주: 종합소득세 2015년, 2016년 횡단면 자료 중 10% 무작위 추출 표본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2]는 Chetty et al.(2011)이 덴마크의 근로소득자 과세자료를 이용해 수행한 집군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덴마크는 3개의 과표구간을 사용했다. 따라서 총 2개의 경계점이 존재하는데, Chetty et al.(2011)에 따르면 최고 소득구간에서 집군이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에게도 집군이 나타났다.

[그림 12] Chetty et al.(2011)의 집군분석

(단위: 이십만원, 명)



출처: Chetty et al., 2011, p. 783, Figure VI(b).

경계점 및 국가별 집근 크기 차이는 다양한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율 변동성이 클수록 집근도 크게 나타난다(Chetty et al., 2011). 세율 인상폭이 증가하면 납세자가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을 지불하고 소득을 변동시킬 유인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같은 세제를 사용하더라도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납세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노동시장이 유연해 노동공급 조절이 용이할수록 세율 인상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도 더 탄력적일 수 있다. 세무 행정에 따라서도 납세행태가 다를 수 있다. 탈세 적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처벌이 클수록 납세자가 탈세를 통해 세율 변화에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 세율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역시 집근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etty, Friedman, and Saez, 2013).

V. 결론

본 연구는 집근이론과 실증분석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론을 종합소득세 자료에 적용하여 세율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6%에서 12%로 증가하는 과세표준 1,200만원 부근에서 집근이 나타났다. 집근은 사업소득자에게 나타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노동시간 조절과 조세회피를 통해 세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과 일치한다(Chetty et al., 2011). 과세표준 1,200만원 이외의 경계점에서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집근분석이 활용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많은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납세자는 세율 인상에 대해 노동공급 조절 혹은 소득이동(income shifting)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규범적 함의(normative implications)가 달라진다(Chetty, 2009). 따라서 집근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근분석으로 도출한 과세소득 탄력성을 이용해 소득세율 인상의 후생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세소득 탄력성은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과 최적 세제(optimal taxation) 추정을 위한 충분통계량을 제공한다

집근분석으로 도출한 과세소득 탄력성을 이용해 소득세율 인상의 후생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세소득 탄력성은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과 최적 세제 추정을 위한 충분통계량을 제공한다.

집근분석은 조세 분야 외에도 경제적 유인이 계단식으로 변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Feldsteind, 1995; 1999).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양도세,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집근분석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근분석은 조세 분야 외에도 경제적 유인이 계단식으로 변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KIPF](#)

참고문헌

이토 코이치로, 『데이터 분석의 힘』, 인플루엔셜, 2018.

Chetty, Raj, “Is the Taxable Income Elasticity Sufficient to Calculate Deadweight Loss? The Implications of Evasion and Avoida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2), 2009, pp. 31-52.

Chetty, R., Friedman, J. N., Olsen, T., and Pistaferri, L. “Adjustment Costs, Firm Responses, and Micro vs. Macro Labor Supply Elasticities: Evidence from Danish Tax Record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2), 2011, pp. 749-804.

Chetty, Raj, John N. Friedman, and Emmanuel Saez, “Using Differences in Knowledge across Neighborhoods to Uncover the Impacts of the EITC on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7), 2013, pp. 2683-2721.

Einav, Liran, Amy Finkelstein, and Paul Schrimpf, “Bunching at the Kink: Implications for Spending Responses to Health Insurance Contrac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46, 2017, pp. 27-40.

Feldstein, Martin, “The Effect of Marginal Tax Rates on Taxable Income: A Panel Study of the 1986 Tax Reform Ac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3), 1995, 551-572.

Feldstein, Martin, “Tax Avoidance and the Deadweight Loss of the Income Tax,”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1(4), 1999, pp. 674-678

Ito, Koichiro, and James M. Sallee, “The Economics of Attribute-based Regula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Fuel Economy Standard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0(2), 2018, pp. 319~336.
- Kleven, Henrik Jacobsen, “Bunching,”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2016, pp. 435~464.
- Lucas, A. M., and Mbiti, I. M., “Effects of School Quality on Student Achievement: Discontinuity Evidence from Kenya,”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6(3), 2014, pp. 234~263.
- Manoli, Day, and Andrea Weber, “Nonparametric Evidence on the Effects of Financial Incentives on Retirement Decision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8(4), 2016, pp. 160~182.
- Saez, Emmanuel, “Do Taxpayers Bunch at Kink Point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2(3), 2010, pp. 180~212.
- Saez, E., Slemrod, J., and Giertz, S. H.,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with respect to Marginal Tax Rat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0(1), 2012, pp. 3~50.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3월 11일 2020년 예산안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 Promises Kept. Taxpayers First”을 의회에 제출함¹⁾
 - 이번 예산안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미 서부지역의 국경 강화, 국방 강화, 퇴역군인 지원, 미국 학생 및 직장인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함²⁾
 - 정부지출은 국방과 관련되지 않은 정부부처의 예산을 5%씩 삭감하는 등의 재정 절감 노력을 통해 총 2.7조의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자 함
 - 본고에서는 예산안 내용 중 국세청에 대한 예산 증가 및 권한 확대 내용과 조세 관련 개정안 내용을 중점으로 기술함

1. 국세청 예산 증가 및 권한 확대

- 예산안에서는 미 국세청에 향후 10년간 150억달러의 예산을 증가시킬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470억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함³⁾
 - 미 국세청이 납세자의 과세신고서 처리 및 환급 업무를 잘 이행하고, 국세행정의 전산화, 납세자에게 유용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국세청의 납세자 신고서 오류 수정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⁴⁾
 - 현행 규정에서는 단순 계산 실수, 납세자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번호를 잘못 기입한 건에 대해서만 국세청에서 수정이 가능함
 - 이번 예산안에서는 고용주의 근로소득 지급액 보고자료(W-2)와 제3자의 소득지급자료와 납세자의 소득 신고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평생 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금액을 신청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1)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administration-presents-president-trumps-fiscal-year-2020-budget-request/>, 검색일자: 2019. 3. 31.

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 FISCAL YEAR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3/budget-fy2020.pdf>, 검색일자: 2019. 3. 31.

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 FISCAL YEAR 2020: Major Savings and Reforms,” p.168,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3/msar-fy2020.pdf>, 검색일자: 2019. 3. 31.

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 FISCAL YEAR 2020: Major Savings and Reforms,” pp.169~17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3/msar-fy2020.pdf>, 검색일자: 2019. 3. 31.

2. 조세 관련 개정안⁵⁾

가. 세계 개편

-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단체(Scholarship-Granting Organizations)에 개인 또는 기업이 기부한 경우 연간 총 5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함
 -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장학금 지급 비영리단체는 각 주정부에서 승인한 단체로 기부금 수령액을 ‘Career-Technical Dual Enrollment program’ 참여비용, 방과 후 과정 교육비용, 사립학교 교육비, 학교 교과과정에 없는 과목의 수강비용 등 기타 공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단체이어야 함
 - 각 주정부는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단체의 기부금 수입 중 장학금 사용 비율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함
 - 위 개정안은 자녀교육비의 지출에 있어 가구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 메디케어 수혜자에 대해서도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 납입액의 소득공제 허용을 제안함⁶⁾
 - 현행 규정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의료비를 보장 받는 자의 경우 건강저축계좌(HSA)에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위 개정안은 메디케어 수혜 대상인 노인 인구의 의료비 추가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전기차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에너지 전환시설 투자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비과세, 재생에너지 장비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에너지투자세액공제, 주거용 에너지 효율 자산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각종 에너지 관련 조세혜택의 폐지를 제안함
 - 위의 조세혜택 제도 폐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으나⁷⁾ 미 정부 에너지부처의 ‘에너지효율성 및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프로그램(EERE)’⁸⁾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기조의 일환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됨⁹⁾

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 Analytical Perspective," 14. Governmental Receipts, 2019. 3. 11.

6) 메디케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의료비 보장 프로그램임

건강저축계좌(HSA): 의료비 지출 대비 목적으로 개설하는 계좌로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향후 의료비 지출 목적으로 계좌 잔액 인출 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허용함

7) 전미재생에너지협회, <https://acore.org/acore-statement-on-the-trump-administrations-repeal-of-renewable-energy-incentives-and-cuts-to-doe-renewable-energy-programs-in-the-fy-2020-budget/>, 검색일자: 2019. 3. 31.

8)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9) 미 하원, <https://budget.house.gov/publications/report/president-trump-s-2020-budget-dangerous-exercise-ignoring-reality-and-threat>, 검색일자: 2019. 3. 31.



- 위의 에너지 관련 조세혜택 폐지에 대해 유류 (oil), 가스, 석탄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함¹⁰⁾

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나. 세무행정 개선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전자신고 해야 하는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기존에는 250명 이상의 근로자 급여지급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를 의무화하던 것에서 10명 이상의 급여지급내역 신고 시에도 전자신고가 의무화됨

■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급 시 또는 부양가족세액공제(ODTC)¹¹⁾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부모의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녀장려금 및 부양가족세액공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모가 사회보장번호가 없더라도 자녀가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경우 자녀장려금이 지급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부양가족세액공제 제도 간 법적 통일성을 갖추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는 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조세혜택

[캐나다 - 2019년 예산안 발표]

■ 캐나다 재무부는 2019년 3월 19일 2019년 예산안 ‘중산층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BUDGET 2019)’를 발표함¹²⁾

-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 지원, 기반시설 및 대체에너지 투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캐나다 국민의 건강·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예산안에서 제안된 세계개편안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예산안 발표일을 시행일로 함

1. 개인소득세¹³⁾

■ 스톡옵션 수령액이 큰 대기업 직원의 경우, 스톡 옵션 수령액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을 배제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스톡옵션 수령 소득에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정상 소득세율에서 50% 경감된 세율로 과세되는 세제혜택이 적용됨¹⁴⁾

10) 미 하원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조세지출은 향후 10년간 180억달러가 감소된 반면, 오일 가스·석탄산업에 대한 280억달러 규모의 조세지출은 계속 유지될 미 하원, <https://budget.house.gov/publications/report/president-trump-s-2020-budget-dangerous-exercise-ignoring-reality-and-threat>, 검색일자: 2019. 3. 31.

11) Other Dependents Tax Credit으로 2017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인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12) 캐나다 재무부, *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BUDGET 2019*, <https://www.budget.gc.ca/2019/docs/plan/toc-tdm-en.html>, 검색일자: 2019. 4. 1.

13)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Canada - Budget 2019 tabled (20 Mar. 2019), News IBFD에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함

14) 캐나다 재무부, *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BUDGET 2019*, pp.202~203.

-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신생기업, 성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기업 임원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통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공정성을 해침¹⁵⁾
- 대기업 직원의 스톡옵션 과세 규정은 연간 20만 캐나다달러를 기준으로 기준 금액 초과 시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미국 규정에 맞춰 개정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령은 2019년 여름 이전에 발표할 계획임
- 개인 납세자가 직무능력 개발 목적으로 지출한 교육비의 50%만큼 세액공제하는 ‘Canada Training Credit’의 신설을 제안함
 -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교육비 지출금액의 50%만큼 연간 250캐나다달러를 한도(평생한도 5천캐나다달러)로 공제가 가능함
 -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비용은 직무 관련 교육비, 등록비, 자격증 발급비, 시험비가 포함됨
 - 자격요건은 캐나다 거주자이며, 2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net earnings)이 1만캐나다달러 이상이고, 연간 순소득(net income)이 상위 3번째 구간의 기준금액(2019년 기준 14만 7,667캐나다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저축계좌(RRSP)¹⁶⁾ 잔액 인출 시, 비과세를 허용하는 인출금액 한도를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기존에는 2만 5천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퇴직연금계좌 잔액의 비과세 인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를 3만 5천캐나다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인출한 금액은 인출연도 다음 해부터 15년에 걸쳐 다시 퇴직연금납입계좌에 납입해야 함
- 임신 관련 의료비(fertility-related medical expense)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검토할 계획임
 - 난임부부, 동성부부, 비혼모 등 시험관아기 시술과 같은 생물학적 시술방법으로 임신을 해야 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임신 및 출산 보조를 위한 법령(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캐나다 보건국에서 검토할 예정임
- 납세자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 또는 판매 시 세액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이때 기부하는 자산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중 ‘국가적 중요성 기준(national importance)’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부자산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문화적 중요성(outstanding significance), 국가적 중요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15) 캐나다 재무부, *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BUDGET 2019*, pp.203~204.

16)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문화적 중요성은 캐나다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미학적 가치가 있는지, 미술 또는 과학 분야 연구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국가적 중요성은 국가유산의 손실 초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
-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부연도의 납부세액을 면제하거나, 해당 자산을 판매할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함
 -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기부자산의 공정가치를 기반으로 면제함
- 최근 판결에서 국가적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부자산이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세액감면 혜택을 배제한 바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임

2. 법인소득세

- 농·어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범위의 확대를 제안함
 -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이하 “CCPC”)의 사업소득은 50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법인세 경감세율인 9%가 적용됨¹⁷⁾
 - 예외 규정을 두어 CCPC의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다른 CCPC나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은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농·어업 협동조합에 판매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른 CCPC나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도 경감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연구·개발비용 공제한도를 감소시키는 규정 중 ‘과세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법인은 연구개발비용의 15%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의 30%를 3백만캐나다달러 한도로 공제 허용함
 - 예외 규정을 두어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의 작년 과세소득과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가 감소되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과세소득에 따라 공제한도를 감소시키는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신문사(journalism)를 지원하기 위해 ① 신문사를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기관으로 지정, ② 신문사의 뉴스실 직원에 지급한 급여액의 25%만큼 세액공제 허용, ③ 개인 납세자의 디지털뉴스 구독비용에 대해 15%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함
 - 위의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문사는 방송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대중의 관심사 및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생성하는 곳으로 2명 이상의 정

17) 일반 법인세율은 15%임

규직 기사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대표와 이사의 75%는 캐나다 시민이어야 함

- 특정 산업, 스포츠, 오락, 연예 등 분야가 한정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제외됨

- 신문사 뉴스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이며, 직원 1명당 급여 5만 5천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함

- 즉, 직원 1명당 최대 1만 3,750캐나다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공제된 세액공제액은 환급됨

-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됨

- 개인의 디지털뉴스 구독비용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총구독비용 5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함

- 업무용으로 구입한 전기차량 구입비용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

- 위의 개정안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3년 이후부터는 감가상각률을 75%, 2026년 이후부터는 55%로 감소시켜 2028년부터는 폐지할 예정임

- 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공제는 차량당 5만 5천캐나다달러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며, 기준 금액은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임

3. 소비세

- 생물학적 제제, 의료장치, 건강관리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경감혜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난자(human ova), 시험관 배아(in vitro embryos)에 경감세율을 적용함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는 정형외과용 장비, 압박스타킹 등의 의료용 장비에 경감세율을 적용함

- 질병 치료 및 관리가 종합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전체에 대해서도 경감세율을 적용함

4. 납세순응

- 캐나다 국세청에 조세회피 위험 지역에 소재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팀 신설을 목적으로 5천만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함

- 부동산 세무조사팀은 부동산을 판매하고 소득 전액을 신고했는지의 여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양도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의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 세무조사팀 신설을 통해 향후 5년간 6,800캐나다달러의 세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독일 - 영국의 EU 탈퇴 대비를 위한 세법개정안 승인]

■ 독일 상원은 2019년 3월 15일 영국의 EU 탈퇴로 독일 거주자에게 미치는 세법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최종 승인함¹⁸⁾

- 세법개정안 초안은 2018년 10월 9일 독일 재무부가 발표하였으며, 2019년 2월 21일 독일 하원에서 승인됨

■ 영국이 EU 탈퇴 시 독일 세법상 제3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협력국(EEA)과 관련된 특정 세제혜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임

■ 특정 과세제도는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영국을 EU 회원국으로 보아 조세혜택을 계속 적용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독일 거주자가 EU 회원국 거주자에게 자산양도 시 5년에 걸쳐 과세하며, 영국을 제3국으로 보는 경우 영국 거주자에게 자산양도 시 즉시 과세되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양도한 거래의 경우 분할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함
- EU 회원국 간 주식과 자산 교환 시 주식을 7년간 보유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비과세하며 영국의 EU 탈퇴 시 비과세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나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발생한 교환거래의 경우 주식을 7년 보유 시 비과세혜택을 계속 적용함

■ 또한 맨섬(Isle of Man)을 부가가치세법상 영국령으로 보지 않음

- 기존에는 맨섬에서 제공한 공급을 영국에서 제공한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맨섬에서 제공하는 공급은 제3국에서 공급한 것으로 간주함
-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벨기에 - 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수령 시 과세율 개정]

■ 벨기에에는 2019년 3월 15일 소득세법상 연금 수령 나이(pension age) 및 장기근무자의 연금 조기 수령 시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¹⁹⁾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며, 조기 수령 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과세율이 상이함

- 62-64세에 연금 수령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됨
- 61세에 연금 수령 시 18%의 세율이 적용됨
- 60세에 연금 수령 시 20%의 세율이 적용됨

■ 개정안에 따라 현행 연금 수령 나이 기준인 65세는 단계적으로 높이며, 2025년부터 66세로, 2030년부터 67세로 변경함

18) Germany; United Kingdom; European Union - Bill on accompanying tax measures in connection with United Kingdom leaving European Union adopted by German Federal Council (19 Mar. 2019), News IBFD.

19) IBFD, "Law on notion of pensionable age gazetted," 2019. 3. 15.

- 또한 4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 수령 소득에 10%의 세율을 적용함
 - 기존 규정에서는 45년 이상 근무한 자도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10~20%의 세율이 적용됨
- 위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영국 - 조세회피방지 노력·결과 및 향후 계획 공개]

- 영국 재무부와 과세관청은 2019년 3월 13일 그동안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노력·결과 및 향후 계획을 담고 있는 두 가지 보고서를 공개함²⁰⁾
- 첫 번째 보고서인 조세회피, 포탈, 다른 형태의 불이행의 방지(Tackling tax avoidance, evasion and the other forms of non-compliance)는 2010년 이후 조세회피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과 및 향후 계획을 담고 있음²¹⁾
 - 이 보고서는 세 챗터로 나누어져 다른 납세자 형태별 과세관청의 납세협력 전략과 접근방법,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응하는 세부적인 정부의 대응 및 과세관청에 대한 투자와 향후 활동 계획으로 구분됨

- 다른 납세자 형태별 과세관청의 납세협력 전략과 접근방법은 조세행정의 전자화,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조세행정 체계와 중소기업과 개인, 자산가, 대기업별 촉진, 방지, 대응의 구분된 접근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응하는 세부적인 정부의 대응은 2010년 이후 조세회피전략의 판매와 사용을 지양시키고 온라인 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초점을 두며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역외 구조화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관청에 대한 투자와 향후 활동 계획은 2010년 이후 HMRC에 2십억파운드²²⁾ 투자의 세부 내용과 향후 조세회피 방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음
- 또한 두 개의 부록을 통해 2010년 이후 입법안 등의 정부 조세회피 방지 대응 활동과 2019년 재정법(Finance Act 2019)의 효과성 분석을 담고 있음
- 두 번째 보고서인 조세피난처규제 2019(No Safe Haven 2019)는 과세관청의 역외 조세의무 불이행에 대응하는 전략을 담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재무장관의 서언(Foreword from Mel Stride MP, Financial Secretary to the

20)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safe-havens-2019?utm_source=67cf628b-ee14-4c2b-ad00-3ac509e38e57&utm_medium=email&utm_campaign=govuk-notifications&utm_content=immediate &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safe-havens-2019?utm_source=67cf628b-ee14-4c2b-ad00-3ac509e38e57&utm_medium=email&utm_campaign=govuk-notifications&utm_content=immediate, 검색일자: 2019. 3. 31.

21) HM Treasury & HM Revenue & Customs, Tackling tax avoidance, evasion and the other forms of non-compliance, March 2019.

22) 원화로 약 2.98조원(19/3/29 환율 1,492원/파운드 적용 시)



Treasury), 서론, 국제적인 선도, 협력 지원, 적절한 대응, 부록의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보고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역외 조세협력력을 도모하면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음
 - 설정된 목적은 세수의 극대화화 동시에 조세 회피 및 포탈의 감소, 납세자에게 적합한 형태의 조세 변환, 전문적·효율적·참여적인 조직의 설계 및 운영임
- 국제적으로 선도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위해 다른 국가의 과세관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납세자들의 역외 활동에 조력하며 위험과 행동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채택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 이로 인해 룩셈부르크 시티에 소재하는 법인은 고용기금납입료를 포함한 18.19%의 법인세율과 6.75%의 지방세율을 적용받아 24.9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경제적 실체 단위로 이자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에 따라 연결 기준과 별도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이자공제제한 제도는 EBITDA의 30%와 300만유로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연결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별도 기준으로만 적용되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룩셈부르크 - 2019 예산안: 법인세율 인하 및 이자공제 제한 규정 개정]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19년 3월 5일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19년 예산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²³⁾
- 주요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자공제제한제도의 개정임
 - 법인세율을 기존 18%에서 17%로 인하하고, 15%의 경감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 2만 5천유로에서 17만 5천유로로 확대함

[덴마크 - 2019 재정법 의결]

- 덴마크 의회는 2019년 3월 15일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019년 재정법을 의결함²⁴⁾
 - 세법개정안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족한 경우 부과되는 추가 과세세율을 4.8%로 인상하고, 와인과 맥주의 물품세를 인하하며, 항공기의 등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덴마크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직전 3개 연도 평균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면서 자발적으로 추가 세액 납부가 가능한데, 최종 확정 납부세액과 선납세액의 차이분에 대해 2.6%를 추가 과세하고

23) KPMG, <https://home.kpmg/lu/en/home/insights/2019/03/luxembourg-government-presents-the-2019-budget-bill.html>, 검색일자 2019. 3. 31.

24) Denmark - Bill implementing tax measures under 2019 Finance Act adopted (15 Mar. 2019), News IBFD.

있었음²⁵⁾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체코 - EU ATAD 도입 법안 서명]

■ 체코 대통령은 2019년 3월 15일 제3국 혼성불일치를 포함한 EU 조세회피방지지침(ATAD)을 채택하는 법안에 서명함²⁶⁾

- 이 지침은 이자비용공제제한, 출국세, GAAR, CFC 규정 및 혼성불일치 해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²⁷⁾
- 이 법안은 하원에서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다시 하원에서 재의결된 후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프랑스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및 대기업 2019년 법인세율 현행유지안 의회 제출]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3월 6일 디지털서비스세 도입과 대기업 2019년 법인세율 현행유지안을 의회에 제출함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과 관련하여, 프랑스 내 창출된 과세 대상 서비스 관련 매출액(turnover)에 대해 3%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함

- 2018년 3월 EU가 제안한 디지털 경제 과세 지침의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와 유사하며, EU 회원국은 동 지침에 따라 2019년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마친 후 2020년부터 도입하여야 함²⁸⁾
- 납세의무자는 과세 대상 서비스의 매출액이 전체 7억 5천만유로 초과하고, 프랑스 매출액이 2,5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임(프랑스 거주 및 비거주 기업 포함)
- 과세 대상 서비스는 프랑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플랫폼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의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와 관련된 인적(user) 데이터 판매를 포함함²⁹⁾
-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 계산 시 공제됨
- 동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2018년 예산법에서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단계적인 인하안을 발표하였으나,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다시 현행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발표함(31→33.33%)³⁰⁾

- 2018년 제정법에서는 법인세율을 2018년 33.33%에서 2022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25) L. Ambagtsheer-Pakarinen, Denmark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26) Czech Republic - Bill implementing ATAD, introducing other tax changes - signed by president (18 Mar. 2019), News IBFD.

27)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6-2호, 2016 참조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8-4호, 2018.

29) 재화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및 결제서비스, 이메일 및 인터넷을 통해 획득되지 않는 인적 데이터의 판매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0)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3-07_fr_1.html, 검색일자: 2019. 3. 31.



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50만유로 이하 구간에는 28%를, 초과구간에는 31%를 적용하기로 함

-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매출액이 2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0만유로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인 33.33%로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 이는 '노란조끼(gilets jaunes) 운동'³¹⁾에 대한 정부 응답의 일환으로 확인되며, 이후 연도의 세율 인하(2020년 28%, 2021년 26.5%, 2022년 25%)는 변동된 바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홍콩 - 2018/19 예산안 발표]

■ 홍콩 재무장관은 「2018/19 예산안」을 2019년 2월 27일 발표함³²⁾

- 예산안의 주요 세법 개정으로는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사업소득세(profits tax)와 근로소득세(salaries tax)의 부담 완화, 기업의 사업등록비(business registration fees) 등의 면제 등이 있음³³⁾

(소득세율 변경)

■ 홍콩의 소득세율은 현행 4단계 초과누진세율체계에서 2018/19 과세연도에는 5단계로 변경하며,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함

- 가장 낮은 2%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5천홍콩달러 확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함께 세율이 인하되었음³⁴⁾

<표 1> 개정된 홍콩의 소득세율

(단위: 홍콩달러, %)

2017/18과세연도		2018/19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5,000	2	~50,000	2
45,001~90,000	7	50,001~100,000	6
90,001~135,000	12	100,001~150,000	10
135,001~	17	150,001~200,000	14
-	-	200,001~	17

(소득세 감면)

■ 2018/19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해 일시적인 세액 감면을 실시하며, 납부세액의 75%를 감면함

- 한시적으로 2만홍콩달러(한화 약 290만원)을 감면 한도금액으로 하여 감면을 시행하며, 약 19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7/18과세연도는 3만홍콩달러였으나 2018/19과세연도의 감면한 도금액은 1만홍콩

31) 노란조끼운동(gilets jaunes)이란 2018년 10월 21일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후 11월 17일 대규모로 전개되어 주변국(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으로 번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임. 시위대는 정부의 유류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개혁이 중산계급과 노동계급에게만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하고 있음.

32) 홍콩 정부, <https://www.budget.gov.hk/2019/eng/index.html>, 검색일자: 2019. 3. 22.

33) 홍콩 정부,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1902/27/P2019022700482.htm>, 검색일자: 2019. 3. 29.

34) 2019년 3월 29일 1HKD=144원(KEB하나은행)

<표 2> 홍콩의 사업등록비와 사업등록부담금

(단위: 홍콩달러)

사업 개시일	본사 사업등록증(商業登記證)						지점 사업등록증(分行登記證)					
	1년 등록 시			3년 등록 시			1년 등록 시			3년 등록 시		
	사업 등록비	사업등록 부담금	합계	사업 등록비	사업등록 부담금	합계	사업 등록비	사업등록 부담금	합계	사업 등록비	사업등록 부담금	합계
2019. 4. 1~	0	250	250	3,200	750	3,950	0	250	250	116	750	866
2017.4. 1~2019. 3. 31	2,000	250	2,250	5,200	750	5,950	73	250	323	189	750	939
2016. 4. 1~2017. 3. 31	0	250	250	3,200	750	3,950	0	250	250	116	750	866
2014. 4. 1~2016. 3. 31	2,000	250	2,250	5,200	750	5,950	73	250	323	189	750	939

출처: 홍콩 세무국, https://www.ird.gov.hk/eng/pdf/brfee_table.pdf

달러 하향 조정되었음

- 홍콩은 예산안에 일시적인 소득세 감면을 발표하지만 거의 매년 소득세 감면을 부여하고 있음(사업등록비 면제)

로 예상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 기업의 지원 및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등록비 등을 면제하기로 함
 - 홍콩의 기업은 사업 개시일 1개월 이내 사업등록비와 사업등록부담금(business registration levy)을 사업등록소에 납부해야 하는데 동 개정으로 본사 및 지점의 사업등록증 1년 등록 시 납부해야 할 사업등록비를 면제하기로 함
 - 등록된 기업은 매년 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 2019년 4월 1일부터 사업등록비를 면제함으로써 약 140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정부 세수입은 29억홍콩달러 감소할 것으로

[중국-증치세 세율 인하 발표]

- 중국 리커창 총리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증치세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함³⁵⁾
 - 제조업은 현재 16%에서 13%로 인하되며, 건설업 및 운수업 등은 현재 10%에서 9%로 인하됨
 - 동 개정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증치세는 중국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수리·정비 용역 등의 제공,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및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세율의 변경은 다음과 같음

35) 국무원, http://www.gov.cn/premier/2019-03/16/content_5374314.htm, 검색일자: 2019. 3. 22.



<표 3> 중국의 증치세율 인하

증진 세율	인하 후 세율	증치세 대상 업종
16%	13%	상품, 용역, 유형자산 임대서비스, 일반화물 수입 등
10%	9%	①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 부동산·토지사용권·무형자산 양도 등 ② 다음의 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 식량 등 농산품, 식물성 식용유 및 식용 소금 - 상수도,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가스, 천연가스 - 도서·신문·잡지, 비디오 제품 및 전자출판물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등
6%	6%	서비스업, 무형자산 판매 등

자료: IBFD, China (People's Rep.) - Key Features, Country Key Features
IBFD, 검색일자: 2019. 4. 1.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표 4> 일본의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이자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순지급이자 (일본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이자 등은 제외)	순지급이자(제3자포함) (일본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이자 등은 제외)
조정 소득	이자·세금·감가상각전 소득 (국내외 배당이익금불산입액을 가산)	이자·세금·감가상각전 소득 (국내외 배당이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지않음)
기준 비율	50%	20%
제도 적용	· 관련자의 순지급이자 등의 금액이 1,000만엔 이하 · 관계자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금액이 총이자비용 등의 금액의 50% 이하	· 순지급이자 등의 금액이 2,000만엔 이하 · 국내기업그룹의 합산 순지급이자 등의 금액이 합산 조정소득의 20% 이하

자료: 일본 재무부, 세법개정안, p.11,
https://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an19/zeiseian19.pdf, 검색일자: 2019. 4. 1.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일본 -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 개정

■ 일본은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규정에서는 특수 관계자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함

■ 이번 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상 이자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방법의 기준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변경함³⁶⁾

- 대상 이자의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순지급이자에서 순지급이자로 개정함
- 동 개정사항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임

EU - 조세 비협조국가명단(EU리스트) 업데이트

■ 2019년 3월 12일 EU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조세 분야 비협조 국가를 담은 EU리스트(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³⁷⁾

- 이사회는 조세 투명성, 공평 과세, BEPS 방지 조치 이행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비협조 국가를 지정하며, 2017년 12월 최초로 EU리스트를 발표한 이후 매해 1회 이상 해당 국가 리스트를 업데이트함

36) 대상 이자=조정과세소득 × 기준 비율

37) European Council,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검색일자: 2019. 3. 28.

■ 이번 발표에서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마셜아일랜드,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바누아트 총 10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국가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EU리스트에 존재하는 국가는 총 15개국임

- 동 국가들은 특정 기한까지 이사회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비협조 국가로 추가 지정되었음
- 이전까지 발표된 조세 비협조 국가 EU리스트의 국가는 미국령 사모아, 괌,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임

■ 이사회는 EU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서 유럽투자기금에 대한 혜택 규제 및 거래 모니터링 강화, EU리스트 국가와 관계된 납세자에 대한 감사 증가 등 EU 회원국 내 행정 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함

■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아 최초의 EU리스트에 포함되었으나, 해당 제도를 폐지하여 금번 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음³⁸⁾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EU -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대비 완료 성명 발표]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 영국이 다가오는 4월 12일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날 경우인 노딜(no-deal) 상황에 대비한 준비 절차를 완료했다는 성명을 발표함³⁹⁾

- 3월 21일 EU 27개국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브렉시트 기한 연기에 합의함
- 영국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계속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 기한이 연기됨
 -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4월 12일 이전까지 아무런 조건 협의 없이 EU를 탈퇴하거나(노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기한의 장기 연기를 선택하여야 함⁴⁰⁾
- 노딜 브렉시트 경우 영국은 지체 없이 제3국가가 되며, 영국에서 모든 EU법은 효력이 즉시 상실됨
- 또한 탈퇴를 위한 과도기 조건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시민과 기업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됨

38)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7310&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9. 3. 26.

39) European Co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1813_en.htm, 검색일자: 2019. 3. 28.

40) 그러나 EU는 브렉시트 장기연기는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BBC,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776512>, 검색일자: 2019. 4. 2.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7년 12월부터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세관, 소비세, 부가세 지침 등을 발표함⁴¹⁾

● 노딜 브렉시트 시 관련 세관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운송사업자 및 수출사업자를 위한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음

- EU27국⁴²⁾ 입장에서 영국은 지체 없이 제3국가 가 되며, 영국과 거래를 원하는 EU27국 내 사업자는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 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영국에서 승인된 세관 결정은 더 이상 EU27국에 유효하지 않음
- 영국은 더 이상 EU(EU와 협정을 맺은 제3국가 포함)와의 관계에서 무역특혜협정의 당사자가 아님
- 영국과 EU27국 내 영토에 반입/반출되는 모든 재화는 세관 절차가 필요함

●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EU27국 내 재화이동 시 세관에 제출되는 개별소비세(excise tax) 문서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승인된 서류는 제3국 문서로 취급됨을 밝혔음

● 부가세 지침에는 현행 MOSS제도⁴³⁾하에서 영국 및 EU27국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 협조 사항 등을 다룸

- 브렉시트 시점에서 이동 중인 재화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이전에 운송이 시작되었다면 재화의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브렉시트 이전에 수출신고 처리가 되지 않고 단순히 EU27국에서 영국으로 이동된 재화가 브렉시트 이후 반환된 경우에는 부가세 지침의 재수입(re-importation)규정⁴⁴⁾을 적용할 것이라 밝힘

- 브렉시트 이후 6개월 이내에 영국에서부터 EU27국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자의 재산과 관련한 부가세는 면제됨(다만, 이전 거주 시 소유권을 갖고 사용되었던 물건에 한함)

- 브렉시트 이후 영국 또는 EU27국에 등록되지 않은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 전자포털을 이용할 수 없음

- 브렉시트 이전에 부가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신청서를 해당 국가로 직접 제출해야 함

■ 이 외에도 EU 27개국은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대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⁴⁵⁾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41)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3-21_e2_1.html, 검색일자: 2019. 3. 25.

42)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을 말함

43) MOSS는 EU 회원국에 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국에서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소화제도로 2015년에 시행됨

44) 부가세지침 Article 143(1)(e). 다만, 이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법에 명시된 기한까지 재화가 불변된 상태로 재수입되었음을 밝혀야 함

45) EU 27개국의 브렉시트 준비상황은 https://ec.europa.eu/info/brexit/brexit-preparedness/national-brexit-information-member-states_en에서 확인 가능함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회원국의 경제·사회적 우선순위의 진행 상황 평가(European Semester Winter Package 발표)(2019. 2. 27.)¹⁾
 -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분석하고 전년도에 권고된 이슈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국가별 보고서(Countr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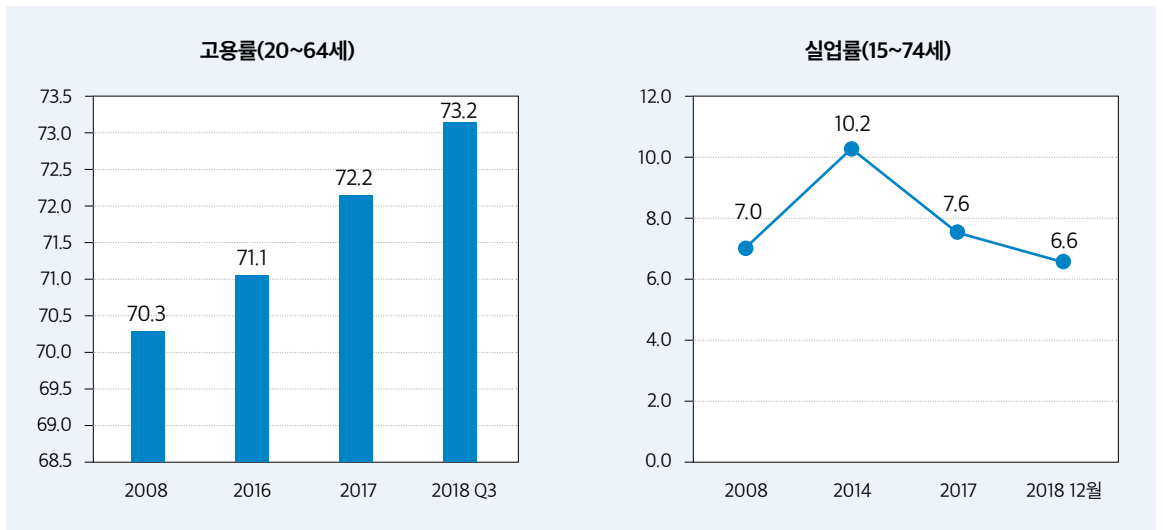
와 국가의 거시경제 불균형(macroeconomic imbalances)²⁾ 여부를 판단하는 ‘심층 검토(in-depth review)’ 결과 등을 제시함

* 이는 EU 경제·재정 정책의 조정 및 감독을 위한 제도인 European Semester 과정의 일환임

- (국가별 보고서의 종합 평가) 집행위는 투자 제고, 책임 있는 재정정책 추진, 잘 설계된 개혁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
 - 고용은 사상 최고치를, 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국가의 채무 생활 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재정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됨
 - 그러나 생산성 둔화, 인구고령화 심화, 급격한

[그림 1] EU의 고용 관련 주요 통계

(단위: %)



출처: European Commission, Factsheet - Key Employment Figures(European Semester 2019: Key Social Figures), 2019. 2. 27.

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Semester Winter Package: assessing Member States' progress on economic and social priorities, 2019. 2. 2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1389_en.htm

2) imbalance를 일부 국내 문헌에서 '불균형'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경제학에서의 'disequilibrium'과 'imbalance'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므로 용어의 사용 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연구원 내부의 논의가 있었음. 이후에 나오는 '불균형'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imbalance를 의미함



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영향 등 도전 과제가 남아 있음

- 일부 국가의 실질 가계소득은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청년 실업률도 높은 상태임

- 글로벌 불확실성이 뚜렷한 시기에, EU 회원국은 생산성 제고, 경제 회복력 개선, 모든 시민에 대한 경제성장 혜택 보장 등을 위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별 정책 권고³⁾ 이행 평가) 2011년 European Semester 도입 이후 2/3 이상의 권고 사항에 대해 ‘일부 또는 그 이상의 개선’을 달성

-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있었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분절 해결을 위한 개혁도 이루어짐

- 회원국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는 EU의 구조개혁 지원 프로그램(Structural Reform Support Programme)을 통해 2019년에 26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

- (심층 검토 결과) 심층 검토 대상으로 지정(2018년 11월)된 13개 국가에 대해 심층 검토⁴⁾를 수행

- 키프로스, 이탈리아, 그리스가 경제적 초과 불균형(excessive imbalances)을 겪고 있으며, 불가리아, 독일, 스페인 등 10개국도 불균형(imbalances)이 존재한다고 평가⁵⁾

- (키프로스) 높은 부실 채권 비중이 금융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도 상당히 부정적이며, 민간 채무 감축 속도도 느림

- (그리스)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채무, 약한 금융부문, 대외 불균형 회복 부진,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 잠재력 등의 문제로 과도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평가

- (이탈리아) 개혁 추진 지연과 기존 개혁에 역행하는 정책 조치가 재정 지속가능성, 생산성, 잠재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며, 실업률과 부실 채권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정부 채무, 생산성 악화 지속이 리스크를 수반

<표 1> 심층 검토 결과

구분	국가
excessive imbalances	키프로스, 그리스, 이탈리아
imbalances	스페인,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주: 자세한 국가별 검토 결과는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Semester Winter Package: assessing Member States' progress on economic and social priorities, 2019. 2. 27.

3) 가장 최근 발표된 권고는 2018년 7월에 확정된 국가별 정책 권고(2018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임

4) 심층 검토는 Macroeconomic Imbalances Procedure(MIP) 제도의 일환임

5) 불균형(imbalances)은 'EU 회원국, EMU, 또는 EU 전체 경제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화를 초래하는 동향', 초과 불균형(excessive imbalances)은 'EMU의 적정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정의. 경상수지, 일반정부채무, 실업률 등 14개의 주요 지표와 25개의 보조 지표를 기초로 평가

[그림 2] 국가별 권고(2018)에 대한 이행 평가

Broad Category	Policy areas	AT	BE	BG	CY	CZ	DE	DK	EE	ES	FI	FR	HR	HU	IE	IT	LT	LU	LV	MT	NL	PL	PT	RO	SE	SI	SK	UK
Public finances & taxation	Fiscal policy & fiscal governance*	Some	Some	Some	None	None	Some	None	None	Non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nc. pensions	Some	Some	None	None	None	Some	None	None	Non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Reduce the tax burden on labour	Some	None	None	None	Non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Som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Broaden tax bases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Reduce the debt bias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Fight against tax evasion, improve tax administration & tackle tax avoidance	None	Some	None	None	Non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Som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Financial sector	Financial services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Housing market	None	None	Non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Some
	Access to financ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Private indebtedness	None	None	None	Non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Labour market, education & social policies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 framework for labour contracts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Unemployment benefits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Non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Incentives to work, job creation, labour market participation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ome	Some	Som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Wages & wage setting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Childcar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Health & long-term care	Some	None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Poverty reduction & social inclusion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Education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kills & life-long learning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tructural policies	Research & innovation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Competition & regulatory framework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Competition in services	Som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Telecom, postal services & local public services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Energy, resources & climate chang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Transport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Public administration & business environment	Business environment	None	Som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Insolvency framework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Public administration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tate-owned enterprises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Civil justic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hadow economy & corruption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 The overall assessment of progress does not include compliance with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No progress
 Limited progress
 Some progress
 Substantial progress
 Fully implemented

출처: European Commission, Infographic - CSR implementation(Implementation of 2018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 - Assessment by CSR subparts), 2019. 2. 27.



- 기타 논의 사항
 - 슬로베니아의 수정된 예산안이 안정성장협약 (SGP)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며 예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
 - 그리스의 경우 2018년 말까지 구체적인 개혁을 상당히 이행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요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
 - 이 외에도 EU 이사회 권고에 따른 회원국별 국가 생산성 위원회(National Productivity Boards) 도입 추진 현황, 성인의 역량 강화(훈련, 재훈련 등) 전략⁶⁾ 이행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EU 재무장관회의(2019. 3. 12.)에서 투자 관련 국가별 권고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⁷⁾
 -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요인과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에서의 향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EU 정상회의, 영국의 EU 탈퇴시기 연기안 채택 (2019. 3. 22.)⁸⁾
 - (배경) 영국은 3월 20일에 EU 탈퇴시기를 2019년 6월 30일로 연기하는 요구안을 보냈고 EU 정상회의(3. 21~22.)에서 이에 대한 검토 후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공식 합의안을 채택함
 - (주요 내용) 영국 의회에서 2019년 3월 29일까지 EU 탈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영국의 EU 탈퇴시기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고, 승인하지 못할 경우 4월 12일까지 연기하며 이 경우 영국은 향후 방안을 4월 12일 이전에 제시할 것임
 - 영국이 5월 23~26일(유럽 의회 선거일)에 여전히 회원국 상태를 유지한다면 영국은 유럽 의회 선거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
 - 도날드 투스크 의장은 4월 12일까지 영국이 EU 의회 선거 시행을 결정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시기의 추가 장기 연장이 자동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밝힘⁹⁾
- EU 집행위원회, 노딜(no-deal) 브렉시트¹⁰⁾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마련(2019. 3. 25.)¹¹⁾
 -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 노딜 시나리오 발생 시 영국에 대한 EU법 적용이 중단되고, 전환(이

6) "Upskilling Pathways: new opportunities for adults,"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224>

7)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Main Results, 2019. 3. 12.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19/03/12/>

8) European Council, Brexit: European Council adopts decision extending the period under Article 50, 2019. 3. 2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3/22/brexit-european-council-adopts-decision-extending-the-period-under-article-50/>

9) European Council, Remarks by President Donald Tusk after the European Council meeting, 2019. 3.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3/21/remarks-by-president-donald-tusk-after-the-european-council-meeting-art-50/>

10) 2019년 3월까지 EU와 영국이 탈퇴 협정 및 EU-영국 간 향후 관계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를 의미

11) European Commission, Brexit preparedness: EU completes preparations for possible "no-deal" scenario on 12 April, 2019. 3. 25.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1813_en.htm

행) 기간도 없으므로 시민과 기업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영국에 대해 EU 국경에 적용하는 규정(세관, 위생 검역 등)과 관세를 즉각 적용
- 영국 기관들의 EU 보조금 수급권과 현 조건에 따른 EU 조달 절차 참여 자격도 중단됨
- 영국 시민들이 EU 지역으로 이동할 때 추가 절차 적용

- (노딜 시나리오에 대한 EU의 대응) 2017년 12월부터 집행위원회가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개의 관련 법안을 제안함
- 노딜 브렉시트 대비 비상대책

* EU의 비상대책은 노딜 시나리오의 전반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는 없음. 이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며 EU 단독으로 채택될 예정임

- (EU 예산 관련) 노딜 시나리오 발생 시, EU는 영국이 2019년 예산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영국의 수급자에 대해 2019년 3월 30일 이전에 결정된 계약에 의한 지불을 2019년에 계속 이행
- (EU 프로그램 관련) Erasmus+ 프로그램¹²⁾ 참여자(영국의 EU 탈퇴 시점 기준)에 대해 연구 지속 및 관련 보조금 수급 보장, 2020년 말까지 아일랜드에 대한 PEACE 프로그램¹³⁾ 지속 등
- 노딜 시나리오가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항공·

도로·철도 연결 및 안전에 대한 조건부 보장, 유럽 시민의 영국 무비자 여행 허용 시 영국인의 무비자 EU 여행 허용 등을 비롯해 어업권, 금융서비스, 사회보장 수급권 등에 대한 대응책 제시

- (국가 보조) 현행 국가 보조(state aids) 규정(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지원, 훈련 지원 허용,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기업의 문제를 완화
- (기술·재정 지원) 노딜 시나리오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예산하에서 세관 직원 교육, 검역, 농업 분야 등 특정 분야에 기술·재정적 지원 제공

■ EU 통계청, 정부기능분류(COFOG)¹⁴⁾에 따른 2017년 일반정부 재정지출 통계 발표(2019. 3. 15.)¹⁵⁾

- (총정부지출) 2017년 EU의 GDP 대비 총정부지출 비율은 45.8%로 2012년(48.9%) 이후 계속 감소함
- 재정건전화 조치, 경제성장 회복세, 경기 역행적 경기 지출 등의 영향과 최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일시적 지출의 감소 등이 반영됨
- EU 국가 중 GDP 대비 총정부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56.5%), 핀란드(54.2%), 벨기에(52.2%) 등이며,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26.3%), 리투아니아(33.1%), 루마니아(33.7%) 등임

12) EU의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

13) 아일랜드 국경의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14)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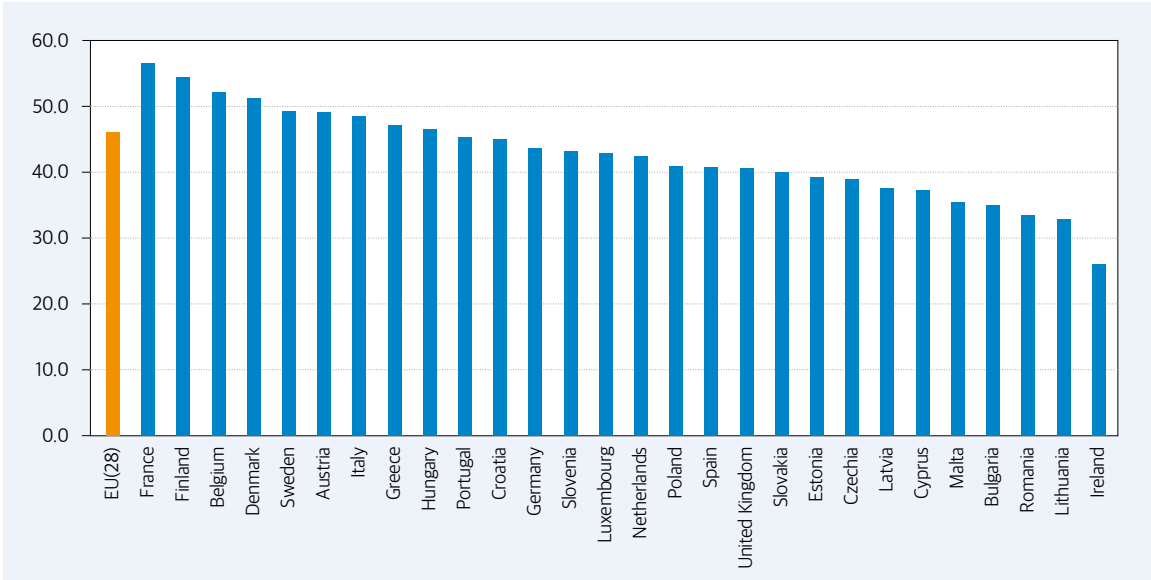
15) EU 통계청,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EU in 2017, 2019. 3. 15.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9665811/2-15032019-BP-EN.pdf/2340c61d-9dc5-4b5f-9b13-db36ff01c082>



[그림 3] 2017년 EU 회원국의 일반정부 총지출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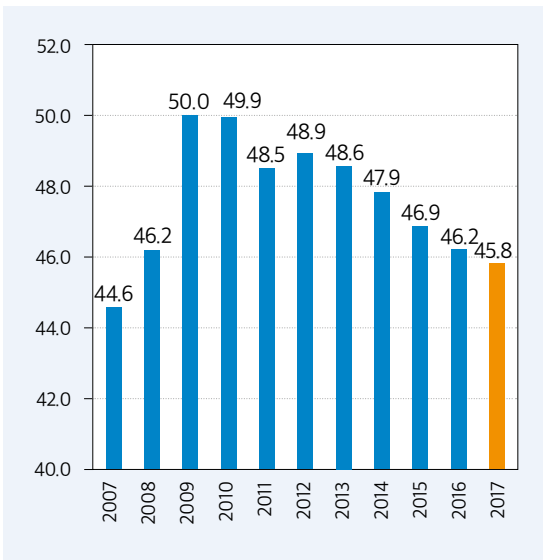


주: 스페인,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잠정치 기준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EU in 2017(2019. 3. 15.)]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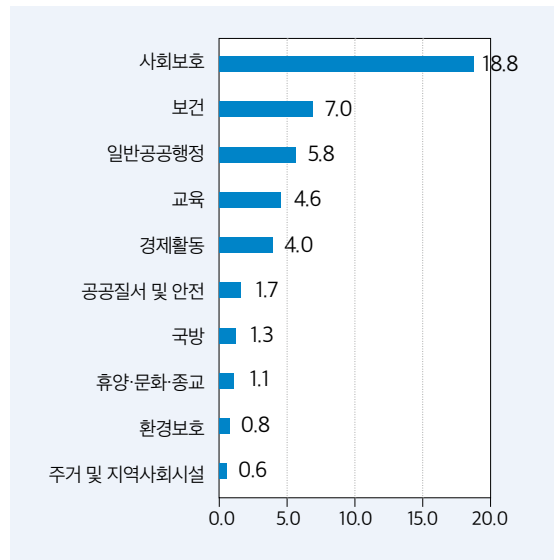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EU 일반정부 지출

(단위: GDP 대비 %)



[그림 5] 2017년 기능별 EU 일반정부 지출

(단위: GDP 대비 %)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EU in 2017(2019. 3. 15.)]를 토대로 작성

<표 2> 정부 기능 분류(COFOG)에 따른 2017년 EU의 일반정부 지출

(단위: GDP 대비 %)

구분	합계	일반공공 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 사회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EU(28)	45.8	5.8	1.3	1.7	4.0	0.8	0.6	7.0	1.1	4.6	18.8
EA(19)	47.0	6.1	1.2	1.7	4.2	0.8	0.6	7.1	1.1	4.5	19.8
Belgium	52.2	7.2	0.8	1.7	6.3	0.9	0.3	7.7	1.3	6.3	19.6
Bulgaria	35.1	3.2	1.1	2.5	4.0	0.7	1.6	4.9	1.0	3.6	12.5
Czechia	39.0	3.9	0.8	1.8	5.7	0.8	0.6	7.5	1.3	4.6	12.0
Denmark	51.2	6.2	1.2	0.9	3.3	0.4	0.2	8.4	1.7	6.5	22.4
Germany	43.9	5.6	1.0	1.5	3.1	0.6	0.4	7.1	1.0	4.1	19.4
Estonia	39.3	3.9	2.0	1.9	4.3	0.7	0.4	5.0	2.1	5.8	13.0
Ireland	26.3	3.4	0.3	1.0	2.3	0.4	0.5	5.1	0.5	3.3	9.5
Greece	47.3	8.3	2.5	2.1	3.6	1.3	0.2	5.2	0.7	3.9	19.4
Spain	41.0	5.6	0.9	1.8	3.8	0.9	0.4	6.0	1.1	4.0	16.6
France	56.5	6.0	1.8	1.6	5.9	0.9	1.0	8.0	1.4	5.4	24.3
Croatia	45.0	7.6	1.1	2.2	5.4	0.6	0.9	6.3	1.8	4.7	14.3
Italy	48.8	8.2	1.3	1.8	3.6	0.9	0.6	6.8	0.8	3.8	20.9
Cyprus	37.5	7.3	2.0	1.7	2.4	0.3	1.6	2.6	0.9	5.7	13.1
Latvia	37.8	4.1	1.7	2.3	5.5	0.6	1.1	3.5	1.7	5.8	11.7
Lithuania	33.1	3.5	1.7	1.5	2.8	0.4	0.4	5.7	1.1	4.9	11.2
Luxembourg	43.1	4.9	0.5	1.1	5.7	1.0	0.6	4.9	1.3	4.7	18.4
Hungary	46.9	8.0	1.0	2.4	7.1	0.4	0.8	4.8	3.5	5.1	14.0
Malta	35.7	5.7	0.5	1.1	4.5	0.9	0.2	5.4	1.1	4.9	11.3
Netherlands	42.5	4.3	1.1	1.9	3.8	1.4	0.3	7.6	1.2	5.1	15.9
Austria	49.2	6.1	0.6	1.4	5.7	0.4	0.3	8.2	1.2	4.8	20.5
Poland	41.1	4.4	1.7	2.1	4.7	0.4	0.6	4.7	1.2	4.9	16.4
Portugal	45.7	7.6	0.9	1.7	5.2	0.6	0.5	6.0	0.8	5.0	17.4
Romania	33.7	4.2	1.8	2.0	4.4	0.5	0.9	4.3	1.0	2.8	11.7
Slovenia	43.2	5.9	0.9	1.6	4.3	0.5	0.5	6.6	1.4	5.4	16.2
Slovakia	40.2	5.6	1.0	2.1	4.1	0.7	0.5	7.1	0.8	3.8	14.5
Finland	54.2	7.9	1.3	1.1	4.3	0.2	0.3	7.1	1.5	5.7	24.9
Sweden	49.4	6.8	1.2	1.3	4.1	0.3	0.8	6.9	1.1	6.8	20.2
UK	40.8	4.7	1.9	1.8	3.1	0.7	0.7	7.4	0.6	4.6	15.2

출처: EU 통계청,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EU in 2017, 2019. 3. 15.



- (기능별 지출) 2017년 GDP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비율은 사회보호(18.8%), 보건 (7.0%), 일반 공공행정(5.8%), 교육(4.6%)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2017년에 총지출 대비 비중이 증가한 분야는 사회 보호(38.2→41.1%)와 보건(14.5→15.3%) 지출뿐임

- (사회보호) GDP 대비 사회보호 지출 비율은 핀란드(24.9%), 프랑스(24.3%), 덴마크(22.4%), 이탈리아(20.9%) 등 6개 국가에서 20%를 상회한 반면, 아일랜드(9.5%), 리투아니아(11.2%), 몰타(11.3%) 등 7개국에서 13%를 하회

- 사회보호 지출 중 노령부문 지출이 전 회원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7년 EU의 GDP 대비 노령부문 지출(연금 포함) 비율은 10.1%를 기록

- (보건) GDP 대비 보건 지출 비율은 덴마크(8.4%), 오스트리아(8.2%), 프랑스(8.0%) 순으로 나타남

- 각 지출별로 GDP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반공공행정-그리스(8.3%), 교육-스웨덴(6.8%), 경제활동-헝가리(71%), 공공질서 및 안전-불가리아(2.5%), 국방-그리스(2.5%), 휴양·문화·종교-헝가리(3.5%), 환경-네덜란드(1.4%),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불가리아·키프로스(1.6%)였음



IMF

■ IMF 이사회, 정책보고서 ‘세계경제의 법인세 부과 (Corporate Taxation in the Global Economy)’에 대하여 논의(2019. 3. 10.)¹⁶⁾

- 2019년 2월 21일 IMF 이사회는 국제 법인세 협정 현황을 설명하는 보고서에 대해 논의함

* 국제 조세체계에 대한 논의는 현재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가 OECD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IMF의 폭넓은 회원국과 권한, 전문지식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

- 보고서는 국제 법인세 협정의 거시적 중요성, 법인세 개혁 분석에서 국가 간 파급효과의 중요성, 저소득 국가의 취약성을 강조한 IMF 분석(2014년)을 바탕으로 작성됨

- (주요 내용) 법인세법이 최근 몇 년 동안 달성된 국제협력력을 유지하고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갖고, 특히 저소득국이 다국적 활동에서 법인세 수입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 세제에 대해 논의

- 이사회는 법인세의 국제적 측면에서의 최근 발전 상황을 재고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에 대한 예비 조사를 제안

- 법인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G20/OECD BEPS 프로젝트와 비OECD 회원국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통합 프레임워크에 찬성하고 공정성, 포괄성 및 폭넓은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법을 찾아야 함

1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9/03/08/pr1969-imf-executive-board-reviews-corporate-taxation-in-the-global-economy>

- OECD가 진행하는 BEPS 프로젝트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진전은 이뤄졌지만,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확대 등에 의한 취약성은 여전히

- 특히 개발도상국의 우려 사항인 수익 이동에 대한 문제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

- 조세협력 플랫폼이 서로 보완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OECD 및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다른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IMF는 국제조세의 표준결정기구는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합의가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OECD, UN, World Bank를 통합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국제 조세 조정지원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 IMF 이사회, 에콰도르에 42억 달러 차관 제공 승인(2019. 3. 11.)¹⁷⁾

- (지원 규모) 확대금융(EFF)을 통해 42억 달러(통화기금 할당액의 435%, 30억 3,500만SDR)를 3년간 지원하기로 승인함에 따라 6억 5,200만 달러(에콰도르 할당액의 67.3%에 해당)의 지원금을 즉시 지급
- (지원 목적) 에콰도르의 부채 비율을 줄이고 유류 공급의 원활화 및 최적화, 공공 임금 억제 및 민간

고용 촉진, 조세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IMF,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2019 Article IV) 결과 발표(2019. 3. 12.)^{18), 19)}

- (경제 상황) 숙련된 노동력, 안정적 금융 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외환보유액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함
- (하방 위험) 투자 및 세계 무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고용 창출 또한 부진함.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잠재성장률의 감소, 양극화 및 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하방 위험이 큼
- (정책적 제언) 금융안정을 유지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imbalance)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
 - (단기) 단기성장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 경제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함. 한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금융부문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이트(tight)한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장기)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함. 사회안전망과 근로시간제, 여성의 노동시장

17)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9/03/11/ecuador-pr1972-imf-executive-board-approves-eff-for-ecuador>

1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9/03/11/korea-pr1975-imf-staff-concludes-2019-article-iv-mission-to-korea>

19) 협정문 제4조(Article IV)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2019년에는 2. 27.~3. 12. 기간 동안 Tarhan Feyizoglu 단장 등 6명의 미션단이 방한하여 연례협의를 실시함)



참여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통하여 유연 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해야 하며,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함

■ IMF 이사회, 그리스 제1차 포스트-프로그램 모니터링(First Post-Program Monitoring) 종료(2019. 3. 12.)²⁰⁾

- 2019년 3월 6일 IMF 이사회는 그리스와 제1차 포스트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마무리함
- (경제 상황) 경제회복이 가속화되어 수출, 민간 소비 및 투자심리가 호전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018년 추정치인 2.1%보다 상승)
- (위험) 중기 채무상환 능력은 충분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취약성이 남아 있어 하방 위험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명목GDP 성장 등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하향 추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위험의 심화, 높은 공적 채무 등 심각한 취약성이 남아 있음
- (정책적 제언)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재정정책을 재조정하며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포괄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당부함
 - (노동시장) 경쟁력 향상, 생산력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

며,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및 경쟁력에 대한 위험이 있음. 생산성을 높이고 비임금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권장

- (재정 관리) 2020년의 감세 계획을 지지하며, 개인 소득세 기준을 확대하면서 직접세율 인하를 우선시할 것을 권고함. 또한 공공 투자 확대 및 공공 재정 관리 개혁과 납세 준수 노력을 가속화하고 체납금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금융 관리 개혁과 규정 준수 노력을 촉구함

■ IMF 이사회,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WAEMU)과 지역협의 체결(2019. 3. 18.)²¹⁾

- 2019년 3월 18일 IMF 이사회는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WAEMU)과 지역협의를 체결함
 - *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WAEMU, 프랑스어 약자 UEMOA): 서아프리카 8개국이 역내 통화 안정을 위해 설립한 통화동맹으로 현재 8개국이 가입(베냉·부르키나파소·코트디부아르·말리·니제르·세네갈·토고·기니비사우), 모두 서아프리카 프랑(CFA)을 사용
- (경제 상황) 서아프리카는 일부 회원국의 교역 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수 호조에 힘입어 실질GDP 성장이 2018년 7년 연속 6%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 총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0.5%p 줄었으며, 유로본드 발행에 의해 대외적립금도 증가
 - 총부채는 2017년 50.1%에서 2018년 52.5%로, 총채무상환은 2017년 26.4%에서 2018년 33%로 증가하였으며, 대외 경상수지 적자는 2017년 국

2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9/03/08/pr1974-greece-imf-executive-board-concludes-first-post-program-monitoring-discussions>
2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9/03/18/pr1981-waemuimf-executive-board-concludes-regional-consultation-with-waemu>

내총생산의 6.6%에서 2018년 6.8%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세는 높은 공공 자본 지출과 높은 세계 유가에 따라 악화된 무역 조건 때문으로 추정

- (정책적 제언) 중기 전망이 공공부채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증가 등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을 지원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 통합, 효과적인 통화 정책 및 추가적인 재정 및 구조 개혁이 필요
- 협정문 제4조에 근거한 모니터링은 WAEMU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결정 후 12개월 주기로 개최될 예정

■ IMF, 실효환율지수 업데이트(2019. 3. 26.)²²⁾

- 2019년 2월 26일 IMF는 수정된 실효환율(EER) 지수를 발표
 - 국제 금융 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발표된 새로운 명목 및 실질 실효 환율지수는 무역 기준 가중치 및 기타 방법론이 개선되어 반영됨
 - 실효환율지수는 자국 통화와 여러 교역 상대국 통화와의 환율 변동을 가중평균한 지수로써 자국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경쟁력의 지표로 사용됨
- 새 가중치는 2007-09, 2010-12 및 2013-15년에 대해 계산되었으며, 가중치의 업데이트로 무역 패턴의 변화를 조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데이터 소스) UN, OECD, World Bank,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에서 수집한 상품무역, 관광 및 제조업에 관한 연간 자료의 3년 평균 단위로 계산

- (대상 확장) 원칙적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은 실효환율지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나, 무역 기준 가중치가 0.45%(기존 1%)를 넘는 상대국만 계산에 포함됨. 이로 인해 새로운 지수 계산에 포함된 국가 풀이 19개 국가에서 31개로 확장됨

- (기간) 종전에는 2004-06년의 고정베이스 가중치를 기반으로 한 반면, 새로운 지수는 2004년 1월부터 3년마다 업데이트되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됨. 2004-06년에 대한 수정된 가중치도 원본 데이터 변경 내용을 통합하여 계산되었으며, 새로운 가중치는 해당 3년 기간(예: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004-06년 가중치,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07-09 가중치 등)에 적용



OECD

■ OECD, 중간 경제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2019. 3. 6.)²³⁾

2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9/03/26/pr1993-the-imf-updates-the-effective-exchange-rates-indices>

23)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9,

<http://www.oecd.org/economy/outlook/global-growth-weakening-as-some-risks-materialise-OECD-interim-economic-outlook-handout-march-2019.pdf>



- (경제전망) 세계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상실하면서 GDP 성장률은 2019년 3.3%, 2020년 3.4%로 전망되며, 하락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정책의 불확실성, 무역긴장의 지속, 기업 및 소비자 심리(confidence) 악화로 경기 둔화 전망
 - 지난해 도입된 무역 제한 조치로 성장, 투자,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은 하락하여 세계무역 성장은 2017년 5.25%에서 2018년 4%로 급격히 둔화
- (주요국 전망) G20 대부분 국가들의 전망치가 11월 전망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유로지역은 대폭 조정됨
 - (미국) 재정지원 효과가 약화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2.6%, 2020년 2.2%으로 전망
 - 견고한 노동시장 성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이 가계소득과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높은 관세로 인해 기업투자와 수출성장은 둔화
 - 연방정부 폐쇄(shutdown)에 따른 성장둔화는 2019년 1분기로 제한되며 이후는 개선될 전망
 - (일본) 기업이이익의 호전과 노동력 부족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하지만, 최근 산업생산과 수출은 매우 둔화되어 GDP 성장률은 2019년 0.8%, 2020년 0.7%로 전망
 - 사회지출 확대, FY2018의 추경, FY2019 예산안의 세율인하 및 임시지출 증가로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단기 영향은 일부 완화될 전망
 - (유로지역) 산업 생산의 약화, 지역 내 무역의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심리 악화 등으로 유로지역의 GDP 성장은 2019년 1%, 2020년 1.2%로 전망
 -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 비중을 반영하여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
- (영국) 강한 노동시장이 가계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로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둔화는 기업심리, 투자 및 수출 전망에 악영향을 주어 경제성장률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1% 미만으로 전망
- (한국) 지속적인 재정 확장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수요를 뒷받침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여 경제성장률은 2019년, 2020년 2.6%로 전망
- (중국) 무역긴장(tension)이 수출과 산업생산에 가중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6.0%로 전망
- (정책제언) 중기성장을 강화하고 균등한 기회 개선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공급 측면의 정책 개혁이 요구되며, 무역긴장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자간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일시중단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여 경제전망을 개선해야 함
 - 무역긴장 및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성장세가 추세 이상으로 유지되는 국가는 통화정상화 재추진 여지 존재
 -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는 거시경제 여건과

불균형(imbalance), 정책 요구를 반영해 다룰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미국, 한국, 일부 EU 회원국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정책은 대체로 중립적일 필요가 있음

- 유로지역의 경우 추가적 통화정책 지원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채무 수준은 높지만 장기금리가 낮을 경우 채무구조의 변동 없이 잘 설계된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짐
- (신흥국)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단과 유가 하락은 단기 리스크를 감소시켰으나, 세계무역의 약화, 금융안정 위협 등 근본적인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국가별 정책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음
- 중국은 수요 약세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며 높은 기업부채와 중기적 디레버리징 과제를 고려해 신중한 목표 설정이 필요
 - 인도와 멕시코는 강력한 거시정책 틀과 유연한 환율, 외화표시 부채에 대한 관리능력이 높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동시에 재정상태를 개선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 터키와 같은 신흥국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 또는 외부 여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므로 보다 강력한 정책기조가 필요
- (구조개혁) 중장기적으로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의 개선은 위기 이전보다 약화되었으므로

투자 및 생산성에 관한 중기 전망을 강화하여 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 강화가 필요

-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경을 초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자유화 정책을 통해 모든 국가는 경제적 이익, 성장과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음

<표 3>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중간 전망치	2018년 11월 전망치 대비 차이	중간 전망치	2018년 11월 전망치 대비 차이
세계	3.6	3.3	-0.2	3.4	-0.1
G20	3.8	3.5	-0.2	3.7	0.0
유로지역	1.8	1.0	-0.8	1.2	-0.4
미국	2.9	2.6	-0.1	2.2	0.1
일본	0.7	0.8	-0.2	0.7	0.0
독일	1.4	0.7	-0.9	1.1	-0.3
프랑스	1.5	1.3	-0.3	1.3	-0.2
영국	1.4	0.8	-0.6	0.9	-0.2
캐나다	1.8	1.5	-0.7	2.0	0.1
호주	2.9	2.7	-0.2	2.5	-0.1
한국	2.7	2.6	-0.2	2.6	-0.3
중국	6.6	6.2	-0.1	6.0	0.0

출처: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9. 3., p. 2.



미국

[예산·결산 등]

■ OMB(예산관리처), FY2020 예산안 발표(2019. 3. 11.)²⁴⁾

- (개요)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A Budget for a Better America)이란 기조하에 총 4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편성
 - (주요 정책과제)²⁵⁾ 이번 예산은 국경지역 강화, 평화 추구, 재향군인 지원, 소아암 치료 연구,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HIV/AIDS) 문제 해결, 마약성 진통제 남용(opioid epidemic) 대응, 노동자 가족 지원 등
- (경제전망) 2019년 올해 실질성장률은 3.2%, 2020년에 3.1%로 소폭 감소하며, 이후 향후 4년간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실업률은 2019년과 동일한 3.6%로 전망되며, 이후 소폭 증가하면서 2023년을 기점으로 4%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표 4> FY2020 대통령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CY ¹⁾)	2017	2018	2019	2020	2021	...	2029
	실적	전망					
GDP 명목 규모	19,485	20,497	21,565	22,694	23,851		35,141
실질GDP 성장률	2.2	2.9	3.2	3.1	3.0	...	2.8
CPI(Urban)	2.1	2.5	2.1	2.3	2.3	...	2.3
실업률	4.4	3.9	3.6	3.6	3.7	...	4.2

주: 1) CY = Calendar Year

출처: OMB, Fiscal Year 2020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9), 2019. 3. 11.

- (재정수입) FY2020 세입은 전년 대비 6.02%(2,070억달러) 증가한 3조 6,450억달러(GDP 대비 16.3%) 전망
 - 주요 세입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세(50%)의 경우 전년 대비 7.4% 증가, 사회보장급여세(26%) 4.2%, 법인세(7%) 18.1% 증가
- (재정지출)²⁶⁾ FY2020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약 4.8%(2,170억달러) 증가한 4조 7,460억달러(GDP 대비 21.2%) 편성(순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한 4,790억달러)
 - (재량지출)²⁷⁾ FY2020 재량지출은 전년(추정치) 대비 1.8% 감소한 1조 3,128억달러
 -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0억 달러, 비국방예산은 9.3% 감소한 5,628억 달러

* 섯다운 사태의 주요 이유였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의 경우, 국토안보부에서 50억달러를 편성하였으며, 국방부는 국토

24) OMB(관리예산처),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3/budget-fy2020.pdf>

25) Securing our Borders and Protecting our Sovereignty / Preserving Peace through Strength / Protecting our Veterans / Investing in America's Students and Workers / Research for Childhood Cancers / Defeating HIV/AIDS in America / Confronting the Opioid Epidemic / Supporting Working Families

26) 세입과 세출, 채무 부분의 전년 기준 수치는 추정치를 의미

27) Table S-8. 2020 Discretionary Overview by Major Agency (Net budget authority 기준)

안보부의 국경장벽 보안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6억달러 배정²⁸⁾

- (의무지출) FY2020 의무지출(순이자지출 포함)은 전년(추정치) 대비 4.7% 증가한 3조 3,200억달러 전망

- (국가채무) FY2020 연방정부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²⁹⁾는 전년(21조 2,890억달러, GDP 대비 79.5%) 대비 6.9% 증가한 22조 4,100억달러(GDP 대비 80.7%) 전망

<표 5> 미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재정전망	실적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2028	2029	2020~2029
예산총량										
수입	16.5	16.1	16.3	16.5	16.5	17.0	...	17.9	18.1	17.3
지출	20.3	21.3	21.2	21.0	20.9	20.5	...	19.5	18.7	20.0
재정적자	3.8	5.1	4.9	4.5	4.2	3.5	...	1.5	0.6	2.8
연방정부 채무	77.8	79.5	80.7	81.6	82.1	81.9	...	74.0	71.3	-

출처: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5),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9. 3. 11.

[기타]

■ 연방채무 한도 유예기간 만료(2019. 3. 1.)³⁰⁾

- 2018 초당적 예산법에서 규정한 국가채무 한도

유예기간³¹⁾이 2019년 3월 1일에 만료된 이후 재무부는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채무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

* 예산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는 미국은 예산과 함께 국가채무의 한도 또는 한도의 유예기간을 법에서 매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³²⁾

* 현재 만료된 국가채무의 유예기한은 2018년 2월 9일에 입법된 2018 초당적 예산법(H.R. 1892 / P.L. 115-123)에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특별조치는 공무원 퇴직/장애신탁기금 투자 유예, 국채투자기금³³⁾과 외환안정기금 투자 유예 및 주/지방정부의 채권³⁴⁾ 발행 중지 등이 있음³⁵⁾

- 므누친(Steven T. Mnuchin) 재무부 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3월 1일부터 주 정부 및 지방채 증권 발행을 중단할 것임을 언급함(2. 21.)

- 이후 재차 보낸 서신에서 공무원 퇴직 및 장애신탁기금(CSRDF)³⁶⁾ 우정사업 퇴직자 건강신탁기금(PSRHF)³⁷⁾의 투자를 유예할 계획을 밝힘(3. 4.)

-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³⁸⁾ 선포 저지결의안 통과(2019. 3. 14.) 후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veto) 행사(2019. 3. 18.) → 대통령 거부

28) OMB,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3/FY20-Fact-Sheet_Immigration-Border-Security_FINAL.pdf

29) 정부 내부거래 제외

30) 미국 재무부,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76/SLGS-Secretary-Letter-Pelosi-2-21-2019.pdf>

31) debt issuance suspension period

32) 2015년 1월 2일에 입법된 2015 초당적 예산법은 채무한도 유예 만료시한을 2017년 3월 16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7년 9월 8일에 입법된 채무한도 유예기간은 2017년 12월 8일로 설정되었음. 이후 2개월 뒤인 2018년 2월 9일에 채무한도 유예기한을 올해 3월 19일로 설정하였음

33) G Fund: Government Securities Investment Fund of the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34)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ies securities: SLGS

35) 미국 재무부,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Description-of-Extraordinary-Measures-03_05_19.pdf

36)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Trust Fund

37) Postal Service Retiree Health Benefits Fund

38)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text-letter-speaker-house-representatives-president-senate-2/>




권에 대한 하원의 재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 (2019. 3. 26.)³⁹⁾

- 국가비상사태 지지결의안은 하원 통과(245:182) 후 상원에서도 59:41로 가결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동 결의안은 의회로 송부⁴⁰⁾

* 대통령의 거부권을 중단(override)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

- 국가비상사태 지지결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하원이 재의결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248:181)로 실패하여 국가비상사태 유지(2019. 3. 26.)⁴¹⁾

 **일본**

■ 재무성, FY2018 제 3사분기 예산사용 상황⁴²⁾ 발표 (2019. 3. 5.)⁴³⁾

- FY2018 제3사분기 일반회계의 국가 수납금액은 21조 5,880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2조 5,595억엔으로, 세출금액이 세입금액을 9,715억엔 초과
- FY2018 제3사분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1.8%,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1.9%를 기록
- FY2018 제3사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

<표 6> FY2018 제3사분기 예산사용 상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986,484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¹⁾ (D)	1,029,454	세입예산액(A)	3,910,795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D)	3,927,286
제3사분기 국가 수납금액(B)	215,880	제3사분기 국가 지출금액(E)	225,595	제3사분기 국가 수납금액(B)	747,595	제3사분기 국가 지출금액(E)	798,710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1.8 (18.1)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1.9 (21.3)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9.1 (16.6)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0.3 (19.2)
제3사분기까지 누계(C)	550,558	제3사분기까지 누계(F)	715,817	제3사분기까지 누계(C)	2,912,957	제3사분기까지 누계(F)	2,983,698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55.8 (54.8)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69.5 (69.1)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74.4 (75.6)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75.9 (75.4)

주: 1. () 안은 전년 동기 비율

1)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 등을 증감시킨 금액을 의미. FY2018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 2019. 3. 5.

39) CNBC, <https://www.cnbc.com/2019/02/12/trump-addresses-border-security-deal-to-avoid-government-shutdown.html>

40) 한편, 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지지결의안 통과 당일, 텍사스주(Ken Paxton), 인디애나주(Curtis Hill), 루지애나주(Jeff Landry) 법무부 장관은 언론지 (2019. 3. 14.)를 통해 국가비상사태의 헌법적 정당성 지지 발언 발표

→ USA Today, <https://www.usatoday.com/story/opinion/2019/03/14/donald-trump-border-national-emergency-declaration-constitutional-attor>

41)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house-fails-to-override-trump-veto-on-southern-border-emergency/2019/03/26/41e5bfee-4fdb-11e9-a3f7-78b7525a8d5f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6e88dab382ed

42) 예산사용 상황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 수납 상황 및 소납·조직·항(項)별 지출 상황과 특별회계의 수지(收支) 상황에 대한 각 부처의 월별 보고를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임

43) 재무성, 『平成30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 2019. 3. 5. http://www.mof.go.jp/budget/report/budget_use/fy2018/30_3a.pdf

비 수입 비율은 19.1%,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0.3%를 기록

[기타]

■ 내각부, 2018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19. 3. 8.)^{44), 45)}

- 2018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 실질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연율 1.9%), 명목GDP 성장률은 0.4%(연율 1.6%)로, 실질성장률과 명목성장률 모두 1차 속보치(실질 0.3%, 명목 0.3%) 대비 상향 조정되었음
 - (민간수요) 민간수요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9%로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의 1차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0.4%)에도 불구하고,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율이 1차 속보치 대비 크게 상향 조정(2.7%)되었음에 기인
 - (공적 수요) 공적 수요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2%로 1차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최종소비지출과 공적 고정자본형성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 1차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되었음에 기인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 수출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1.0%로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2.7%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국내외 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 기여도는 민간수요의 기여도, 특히 민간재고 증감의 기여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된 0.8%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 기여도(외수)는 1차 속보치와 동일한 -0.3%를 나타냄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하여 1차 속보치와 동일

44) 내각부, 「2018(平成30)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9. 3. 8.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45) 분기별 GDP의 1차 속보는 해당 분기 종료 후 1~2개월 후에 발표되며, 2차 속보는 1차 속보치 발표 이후 새롭게 이용 가능한 기초자료들을 반영하여 1차 속보치 발표 후 약 1개월 뒤에 발표함. 1차 속보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월 제2호, 2019, '일본 편' 참조



<표 7> 2018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2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 분기 대비, %)

항목	2017년	2018년						2018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여도		4분기 연율환산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국내총생산(GDP)	0.4	-0.1	0.5	-0.6	0.3	0.5	-	-	1.4	1.9
국내수요	0.4	-0.2	0.6	-0.5	0.7	0.8	(0.6)	(0.8)	2.6	3.1
민간수요	0.5	-0.2	0.9	-0.5	0.7	0.9	(0.5)	(0.7)	3.0	3.8
민간최종소비지출	0.5	-0.2	0.6	-0.2	0.6	0.4	(0.3)	(0.2)	2.4	1.6
민간주택투자	-3.2	-2.0	-2.0	0.6	1.1	1.1	(0.0)	(0.0)	4.7	4.6
민간설비투자	0.7	1.0	2.5	-2.6	2.4	2.7	(0.4)	(0.4)	9.8	11.3
민간재고증감	(0.1)	(-0.1)	(-0.1)	(0.1)	-	-	(-0.2)	(0.0)	-	-
공적 수요 ¹⁾	0.0	-0.0	-0.1	-0.3	0.4	0.2	(0.1)	(0.1)	1.6	1.0
정부 최종소비지출	0.0	0.2	0.1	0.2	0.8	0.7	(0.2)	(0.1)	3.2	3.0
공적 고정자본형성 ¹⁾	-0.1	-0.7	-0.7	-2.3	-1.2	-1.7	(-0.1)	(-0.1)	-4.6	-6.8
공적 재고증감 ¹⁾	(0.0)	(-0.0)	(-0.0)	(-0.0)	-	-	(0.0)	(0.0)	-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0)	(0.1)	(-0.1)	(-0.1)	-	-	(-0.3)	(-0.3)	-	-
재화·서비스 수출	2.2	0.4	0.4	-1.4	0.9	1.0	(0.2)	(0.2)	3.7	4.0
재화·서비스 수입	2.3	0.0	1.3	-0.7	2.7	2.7	(-0.5)	(-0.5)	11.3	11.3

주: 1. () 안은 국내총생산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공적 수요는 Public Demand,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Public Investment, 공적 재고증감은 Change in Public Inventories를 의미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8(平成30)年10~12月期四半期別 GDP 速報(2次速報値)」, 2019. 3. 8.

<표 8> 연도별 실질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항목	회계연도(Fiscal Year)			역년(Calendar Year)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내총생산 (GDP)	0.9	1.9	-	0.6	1.9	0.8	-
국내수요	0.1	1.5	(1.5)	0.0	1.4	0.8	(0.8)
민간수요	-0.1	1.8	(1.3)	-0.3	1.7	1.1	(0.8)
민간최종소비지출	0.0	1.1	(0.6)	-0.1	1.1	0.4	(0.2)
민간주택투자	6.3	-0.7	(-0.0)	5.9	2.1	-5.7	(-0.2)
민간설비투자	-0.5	4.6	(0.7)	-1.5	3.9	3.9	(0.6)
민간재고증감	(-0.2)	-	(0.1)	(-0.1)	(-0.0)	-	(0.2)
공적 수요 ¹⁾	0.7	0.6	(0.1)	1.0	0.4	-0.1	(-0.0)
정부최종소비지출	0.7	0.4	(0.1)	1.4	0.3	0.8	(0.2)
공적 고정자본형성 ¹⁾	0.6	0.5	(0.0)	-0.3	0.7	-3.2	(-0.2)
공적 재고증감 ¹⁾	(-0.0)	-	(0.0)	(-0.0)	(0.0)	-	(-0.0)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8)	-	(0.4)	(0.6)	(0.6)	-	(0.0)
재화·서비스 수출	3.6	6.4	(1.1)	1.7	6.8	3.1	(0.6)
재화·서비스 수입	-0.9	4.0	(-0.6)	-1.6	3.4	3.3	(-0.6)

주: 1. () 안은 국내총생산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공적 수요는 Public Demand,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Public Investment, 공적 재고증감은 Change in Public Inventories를 의미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8(平成30)年10~12月期四半期別 GDP 速報(2次速報値)」, 2019. 3. 8.



독일

[예산결산 등]

■ 연방재무부, 2020년 예산안 및 FY2019-2023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2019. 3. 20.)⁴⁶⁾

* 채무제한법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기본수치(세출, 세입, 차입액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방식

- (중기재정계획) 2020년 예산안 기본 수치는 기록적인 투자 증가 및 감세정책 등 2023년까지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 제시

- 예산 규모는 연평균 약 1.5%씩 증가하여 2023년 3,751억 유로 증가

- (재정지출)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및 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표어로 2020년 기본 수치는 전년 대비 62억유로 증가한 3,626억 유로임

- (미래지향적 투자)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위해 인프라, 교육, 주택, 연구개발 등에 2023년까지 1,580억유로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

- 디지털교육, 인공지능 개발에 중점 투자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혜택(steuerliche Förderung)을 부여할 계획
- 또한 국방부문 지출과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예산을 점차 증액

- (사회적 연대) 아동수당 증액,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⁴⁷⁾ 폐지, 임대주택 확대, 내치 강화 등 사회적 연대 및 가처분소득 강화

<표 9> FY2020 예산 및 FY2019-2023 중기재정계획 기본 수치
(단위: 억유로, %)

구분	2019 목표	2020 기본 수치	중기재정계획안 기본 수치		
			2021	2022	2023
재정지출	3,564	3,626	3,661	3,718	3,751
전년 대비 증감률	2.4	1.7	1.0	1.6	0.9
재정수입	3,564	3,626	3,661	3,718	3,751
조세수입	3,255	3,286	3,375	3,488	3,602
신규차입	-	-	-	-	-
투자	389	396	396	396	396

출처: 연방 재무부, Eckwerte für Haushalt 2018 und Finanzplan bis 2022, 2018. 5. 2.



프랑스

[기타]

■ 보건·연대부(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전년 대비 경제활동 추가수당(Prime d'activité, PA) 수혜자 증가(110만명) 결과를 발표(2019. 3. 8.)⁴⁸⁾

- 경제활동 추가수당은 사회적 원조지원(사회보장 무기여)과는 달리, 근로(사회보장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저소득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46) 연방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9/03/2019-03-20-pm-eckwertebeschluss.html;jsessionid=D15DC61E38CF52641BEC15B747E8AEBA>
 47) 통일연대세: 독일의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 1998년부터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5.5% 부과(1997년까지 7.5%)(연방재무부, 2019)
 48) 프랑스 보건·연대부, <https://www.gouvernement.fr/prime-d-activite-11-million-de-beneficiaires-supplementaires>



소득 기준이 면제받을 자격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충적 성격의 사회수당⁴⁹⁾

- (대상)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 근로자, 자영업 종사자 등

- (지급금액 예시) 대상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지급

- 자녀가 없고 최저임금을 받는 단독가구는 월 241유로 지급
- 한 자녀를 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구는 월 292유로 지급
- 두 자녀를 부양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부부의 경우 월 407유로 지급

-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해당 수당의 월 지급액을 최대 90유로 증액하고, 수혜자 범위를 확대(자영업자 및 공무원 포함)하여 수혜자의 수가 증가(380만→500만명)

■ 프랑스 통계청(INSEE), 2018년 일반정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2019. 3. 26.)^{50), 51)}

- 2018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2.5%(596억유로)로 전년 2.8% 대비 0.3%p 감소
 - GDP 대비 재정수입은 전년 53.6%에서 53.5%로, 지출은 56.4%에서 56.0%로 감소
- 2018년 말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일반정부 채

무는 GDP 대비 98.4%(2조 3,153억유로)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일반정부 순채무*는 GDP 대비 89.5%(2조 1,065억 유로)로 집계

* 일반정부 순채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일반정부 채무에서 정부가 소유한 예금, 용자, 유가증권(negotiable securities)을 뺀 수치

<표 10>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정수지	-3.6	-3.5	-2.8	-2.5
재정지출	56.8	56.6	56.4	56.0
재정수입	53.2	53.0	53.6	53.5
일반정부 총채무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95.6	98.0	98.4	98.4
일반정부 순채무	86.4	89.2	89.5	89.5
Compulsory levy	44.5	44.6	45.2	45.0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 통계청(INSEE), 2018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2019. 3. 26.)⁵²⁾

- 2018년 4사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0.3%이고, 2018년 GDP 성장률은 1.6%, 2017년 2.2%를 기록
 - 가계소비 지출은 전 분기 대비 0.0% 성장률을 보였으며,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3사분기 1.0%에서 4사분기 0.3%로 둔화
 - 수입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3사분기 -0.2%에서 4사분기 1.2%로 크게 증가

49) 프랑스의 적극적 연대급여(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는 사회원조적 성격의 수당인 기본 RSA(RSA score)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업과 빈곤 방지, 경제활동 및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인 경제활동 추가수당(Prime d'activité: PA)으로 구분됨. RSA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며, 경제활동 추가수당은 이전의 취업 추가수당(한국의 근로장려세제에 해당) 등을 통합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임(오민애, 「프랑스 경제활동 추가수당 제도의 통합 배경과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6, pp. 88~96 내용을 정리)

50) 프랑스 통계청(INSEE),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3901119>

51) 프랑스 통계청에서는 매년 3월 말 일반정부 국민계정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함. 이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통보되는 공공채무와 적자 예상수치와 일치함. 2019년 5월 15일에 2016~2018년 주요 지표들의 개정판이 공표되면서 수치가 개정될 수 있음

52) 프랑스 통계청(INSEE),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3900634>

<표 11>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18 Q1	2018 Q2	2018 Q3	2018 Q4	2017 (전년 대비)	2018 (전년 대비)
GDP 성장률	0.2	0.2	0.3	0.3	2.3	1.6
가계 소비	0.3	-0.1	0.4	0.0	1.1	0.8
정부 소비	0.1	0.3	0.2	0.4	1.4	1.1
총고정자본형성 ⁵⁾	0.1	0.8	1.0	0.3	4.7	2.9
수출	-0.6	0.3	0.6	2.2	4.7	3.3
수입	-0.7	0.7	-0.2	1.2	4.1	1.3

주: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은 1.4%, 2021~2023년은 모두 1.6%로 전망

- (물가) 2019~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

- (실업률) 2023년까지 실업률은 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이는 1975년 이후 최저치임



영국

[예산결산 등]

■ 재무부, Spring Statement 2019 발표(2019. 3. 13.)⁵³⁾

- (배경) 영국은 11월경 예산책임청(OBR⁵⁴⁾)의 경제·재정 전망과 함께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고 다음 해 3월 경제·재정 전망이 수정되면서 예산안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함
- (경제전망) 세계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성장률) 2019년 경제성장률은 1.2%로 독일

<표 12> 영국 경제전망

(단위: %, %p)

구분	실적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GDP 성장률	1.8	1.4	1.2	1.4	1.6	1.6	1.6
10월 전망 대비 변화분	0.1	0.1	-0.4	0.0	0.1	0.1	0.0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7	2.5	2.1	1.9	2.0	2.0	2.0
10월 전망 대비 변화분	0.0	-0.1	0.0	-0.1	-0.1	-0.1	0.0
실업률(LFS)	4.4	4.1	4.1	4.1	4.1	4.0	4.0
10월 전망 대비 변화분	0.0	0.1	0.4	0.3	0.2	0.1	0.0

출처: 예산책임청, *Economic and Fiscal Outlook-March 2019*, 2019. 3., Table 1.1을 재구성

- (재정전망) 지난 가을 전망 이후 재정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책임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전환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09-10 이래 4/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FY2023-24까지 GDP 대비

53) 정부통합 홈페이지, "Spring Statement 2019: what you need to know," 2019. 3. 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spring-statement-2019-what-you-need-to-know>

정부통합 홈페이지, "Spring Statement 2019: Philip Hammond's speech," 2019. 3. 13.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spring-statement-2019-philip-hammonds-speech>

예산책임청,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19*, 2019. 3. 13.

<https://obr.uk/efo/economic-fiscal-outlook-march-2019/>

의회, "Spring Statement: Chancellor responds to latest OBR forecasts," 2019. 3. 13.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9/march/spring-statement-chancellor-will-update-commons-after-publication-of-obr-forecasts/>

54)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FY2016-17에 정점(GDP 대비 85.1%)을 찍은 공공부문 순채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23-24에 7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13> 영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수입 및 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Public Sector Current Receipts)	36.4	37.0	36.9	37.1	37.1	37.2	37.2
총관리지출 (Total Managed Expenditure)	38.5	38.1	38.2	38.0	37.9	37.7	37.8
재정적자 및 채무							
공공부문 순차입 (Public Sector Net Borrowing)	2.0	1.2	1.3	0.8	0.7	0.6	0.5
공공부문 순채무 (Public Sector Net Debt)	84.7	83.3	82.2	79.0	74.9	74.0	73.0

출처: 예산책임청,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19*, 2019.3., Table 1.2를 재구성

-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최첨단과학 및 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 브렉시트, 클린 경제로의 전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등에 대한 진행사항 및 계획을 포함
 - (최첨단 과학 및 기술) 지난 가을 예산안에서 경제 전환과 숙련 일자리 창출,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최첨단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계획
 - 디지털 경제 경쟁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술대기업이 점점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 규율을 업데이트함

- 옥스퍼드주 최첨단 시설의 최첨단 레이저 기술(Extreme Photonics)에 8,100만파운드를 투자하고, 에딘버러에 있는 새로운 슈퍼컴퓨터에 7,900만파운드를 지원
-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떠나더라도 영국 경제는 개방되어 있고 국제적인 방문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2019년 6월부터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한국 국민들은 영국 공항과 유로스타 터미널에서 e-gate 사용 가능
 - 2019년 6월부터 입국신고서 폐지 시작
 - 올해 가을부터 연구기관과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고속열차 비자 쿼터에서 박사급 인력에 대한 면제 혜택을 부여
- (클린 경제) 지난 가을 예산안에서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 25개년 환경계획(25 Year Environment Plan)을 기반으로 클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계획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측정에 대한 투자 지원 방법 모색을 위해 기업 에너지 효율성 계획(Business energy efficiency scheme)을 요청할 계획
 -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망에서 그린가스 비중을 늘림으로써 가스 공급의 탈탄소화를 추진
 - 2025년까지 미래주택표준(Future Homes Standard)을 도입하여 저탄소 난방 및 세계 최고 생활 수준의 에너지 효율로 미래를 보장

- (교육과 숙련) 지난 가을 예산안에서는 현대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숙련(skill)을 갖추 수 있는 단계들을 설정
 - 재학 중 빈곤 퇴치를 위해 중등교육 과정의 여학생들에게 무료 위생용품을 제공
 - 최저임금 영향에 관한 최신 국제연구 검토를 실시하고, 2020년 이후 법정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주택 및 인프라) 2017년 발표된 가을 예산안에서 주택 공급을 1970년 이래 최고 생활 수준(연평균 30만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
 - 약 3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보증제도(Affordable Homes Guarantee Scheme)를 통해 주택협회에 의한 대출을 최대 30억파운드까지 보증
 - 인프라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을 게시하였고, 민간 인프라 투자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지출 검토) 정부는 예산 검토와 함께 지출 검

토를 실시할 예정

- 향후 3년에 대한 자원 지출(경상 지출) 및 부처별 예산을 설정
- 이전 지출 검토와 마찬가지로 각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상향식(bottom up) 정밀 분석을 수행하여 자본 지출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를 실시

[기타]

■ 메이 총리, EU와 브렉시트⁵⁵⁾ 재협상 합의 발표 및 하원 투표 실시(2019. 3. 11.; 3. 12.; 3. 13.; 3. 14.)^{56), 57), 58), 59)}

- (브렉시트 재협상) 메이 총리는 3월 11일 EU가 재협상에 합의하였고, 수정 합의안에는 공동기구 설치 등 다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발표
- 브렉시트 협정에 상응하는 법적 무게(legal weight)가 있는 공동기구를 설치하여 EU가 무기한으로 안전장치(backstop)*를 적용할 수 없도록 보장

*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국경통제(hard border)를 피하고자 한 조항

55)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전의 진행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및 2019. 1. 18.; 2. 1.; 2. 15.; 2. 28일자(홈페이지 등록일 기준) 『재정동향』을 참고 바람

56) 정부통합 홈페이지, "Prime Minister's press statement in Strasbourg: 11 March 2019," 2019. 3. 11.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rime-ministers-press-statement-in-strasbourg-11-march-2019>

57) 정부통합 홈페이지, "PM statement in the House of Commons: 12 March 2019," 2019. 3. 12.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tatement-in-the-house-of-commons-12-march-2019>

의회, "Government's Brexit deal defeated again in 'meaningful vote,'" 2019. 3. 12.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9/march/key-brexit-vote-as-meaningful-vote-returns-to-the-commons/>

58) 정부통합 홈페이지, "PM statement in the House of Commons: 13 March 2019," 2019. 3. 13.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tatement-in-the-house-of-commons-13-march-2019>

의회, "House of Commons vote on no-deal Brexit," 2019. 3. 13.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9/march/house-of-commons-to-vote-on-no-deal-brexit/>

59) 의회, "House of Commons to vote on Article 50 extension," 2019. 3. 14.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9/march/house-of-commons-to-vote-on-article-50-extension/>



- 무기한으로 안전장치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기구를 통해 중재하며, 위반 발견 시 영국은 안전장치를 중단시킬 수 있음
- 영국과 EU는 2020년 12월 말까지 안전장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공동 작업에 착수
- 안전장치가 적용되고 향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어 후속 합의의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영국은 일방적 선언(unilateral declaration)을 시행
- (하원 투표) 수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3월 12일 하원 투표(2차 meaningful vote)를 실시하였으나 부결
- 13일 ‘노딜 브렉시트 거부안’에 대한 하원 투표 가결(즉, 노딜 브렉시트 거부), 14일 ‘브렉시트 연기안’에 대한 하원 투표 가결

■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⁶⁰⁾ 연장 요청 및 EU의 조건부 동의(2019. 3. 20.; 3. 21.)^{61), 62)}

- 지난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메이 총리는 20일 브렉시트 협정 비준 마무리를 위한 6월 30일까지의 연장을 EU에 요청

- 이에 유럽 이사회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 서 가결된다면 5월 22일까지 연장에 동의, 그렇지 않을 경우 4월 12일까지 연장에 동의
- 또한 영국이 EU 의회 선거 기간인 5월 23~26일에 여전히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경우, EU법에 따라 의회 선거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캐나다

[예산·결산 등]

■ 재무부, 2019년 예산안(Budget 2019) 발표(2019. 3. 19.)⁶³⁾

- (예산기조) 2019년 예산안은 「중산층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를 주제로, 캐나다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을 포함
-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발전(Building a Better Canada), 조화(Advancing Reconciliation), 변화(Delivering Real Change)에 대한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제시

60)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전의 진행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및 2019. 1. 18.; 2. 1.; 2. 15.; 2. 28.; 3. 28일자(홈페이지 등록일 기준) 「재정동향」을 참고 바람

61) 정부통합 홈페이지, "Prime Minister's letter to President Tusk: 20 March 2019," 2019. 3. 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ime-ministers-letter-to-president-tusk-20-march-2019>
 정부통합 홈페이지, "PM statement on Brexit: 20 March 2019," 2019. 3. 20.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tatement-on-brexite-20-march-2019>

62) 정부통합 홈페이지, "PM statement at the EU Council: 21 March 2019," 2019. 3. 21.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tatement-at-the-eu-council-21-march-2019>
 정부통합 홈페이지, "Confirmation of UK Government agreement to Article 50 extension," 2019. 3. 22. <https://www.gov.uk/government/news/confirmation-of-uk-government-agreement-to-article-50-extension>

63) 캐나다 재무부, <https://www.budget.gc.ca/2019/home-accueil-en.html>

- (경제전망) 20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이하 FES)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1.8%로 전망
 - 2019년 실업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5.7%로 전망되며, 2018-2023년 평균 실업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1%p 하락한 5.9%로 전망
 - 2015년 11월 이후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새 일자리의 3/4은 full-time positions) 되었으며, 캐나다 실업률은 지난 40년 간 가장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 중임

<표 14>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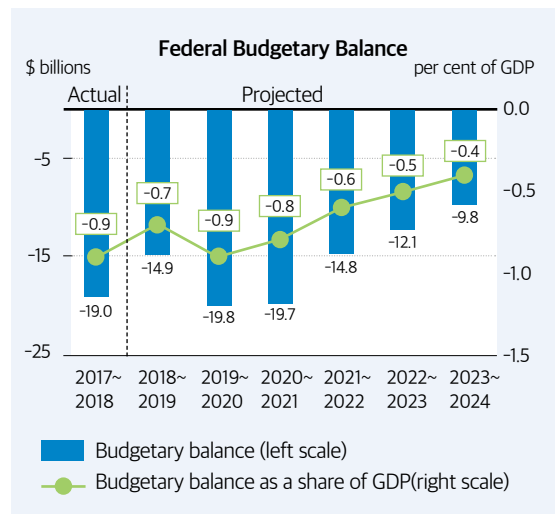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023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8	2.2	1.6	1.7	1.6	1.8	-	-
2018 Fall Economic Statement	1.9	1.9	1.6	1.6	1.9	1.9	1.8
Budget 2019	1.9	1.8	1.6	1.7	1.9	1.9	1.8
실업률							
Budget 2018	6.0	6.0	6.1	6.0	6.0	-	-
2018 Fall Economic Statement	5.9	5.8	6.0	6.1	6.0	6.0	6.0
Budget 2019	5.8	5.7	5.9	6.0	6.0	5.9	5.9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Budget 2018	1.9	2.0	1.9	1.9	2.0	-	-
2018 Fall Economic Statement	2.4	2.1	1.9	1.9	2.0	2.0	2.0
Budget 2019	2.3	1.9	2.0	1.9	2.0	2.0	2.0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 Table A2.1 일부 발췌

- (재정전망) FY2019-20 재정적자는 19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9%)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3-24에는 9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4%)를 기록할 전망
 - GDP 대비 누적 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⁶⁴ 비율은 FY2019-20에는 30.7%(7,054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28.6%(7,617억캐나다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그림 6]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캐나다달러, % of GDP)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 Chart 4

- (세입전망) FY2019-20 총세입은 3,38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7%), 이후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출전망) 총세출은 FY2018-19 전년 대비

64) 공식채무지표로 누적 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차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4.9% 증가한 3,235억캐나다달러, FY2019-20 3,29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FY2019-20 프로그램 지출은 3,294억 캐나다 달러, 이자지출은 262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15>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

구분	전망(projection)						
	2017 -18	2018 -19	2019 -20	2020 -21	2021 -22	2022 -23	2023 -24
총세입 (GDP 대비 %)	311.2 (14.5)	332.2 (14.9)	338.8 (14.7)	351.4 (14.8)	366.7 (14.9)	380.7 (14.8)	395.5 (14.8)
총세출 (GDP 대비 %)	330.2 (15.4)	347.1 (15.7)	355.6 (15.4)	368.2 (15.5)	378.4 (15.3)	389.8 (15.2)	402.2 (15.0)
프로그램 지출	308.3 (14.4)	323.5 (14.6)	329.4 (14.3)	339.7 (14.3)	348.3 (14.1)	358.4 (14.0)	369.1 (13.8)
이자지출	21.9 (1.0)	23.6 (1.1)	26.2 (1.1)	28.5 (1.2)	30.2 (1.2)	31.4 (1.2)	33.2 (1.2)
위험조정 (Adjustment for risk)			-3.0	-3.0	-3.0	-3.0	-3.0
재정수지 (GDP 대비 %)	-19.0 (-0.9)	-14.9 (-0.7)	-19.8 (-0.9)	-19.7 (-0.8)	-14.8 (-0.6)	-12.1 (-0.5)	-9.8 (-0.4)
연방채무 (GDP 대비 %)	671.3 (31.3)	685.6 (30.8)	705.4 (30.7)	725.1 (30.5)	739.8 (30.0)	751.9 (29.3)	761.7 (28.6)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 Table A2.4 일부 발췌

● (주요 정책)⁶⁵⁾

- (투자) 정부의 이인지출을 기반으로 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지원(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증가, 국가주택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 등이 있음

-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지원(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가 주택구매가격의 5~10%를 지원 하는 방식이며 향후 3년간 최대 1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
 - 은퇴저축(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인출 한도 상향 조정: 주택구 매계획(the Home Buyers' Plan: HBP)의 첫 주택 구매 시 은퇴저축의 인출 한도를 3만 5천캐나다달러로 조정
 - 새로운 교육지원 제도(Canada Training Benefit) 도입: 교육 크레딧(Training Credit), 고용보험 교육지원(EI Training Support Benefit), 새로운 휴직 조항(Leave Provisions)을 도입하여 향후 5년간 17억캐 나다달러 이상 투자
 - 국가 의약품 보조정책(National Pharmacare) 강화: 특히 처방의약품 가격 조정을 위해 캐 나다 의약 에이전시(Canadian Drug Agency)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FY2019-20부터 향후 4년간 3,5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
- (발전) 기존 캐나다 플랜에 대한 투자(The Investing in Canada Plan)⁶⁶⁾는 FY2020-21까 지 4만 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

65) 정책별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2019」(2018. 3.) 참고

66) 캐나다 투자계획(The Investing in Canada Plan)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됨. 2016년 시행한 1단계는 대중교통 인프라 펀드, 정수 및 폐수 관련 펀드,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프로그램, 주택 공급 관련 투자 등이 있으며, 2017년부터 시작한 2단계 계획은 캐나다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캐나다 인프라 은행, 재해 완화 기금 등이 있음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모든 국민에게 초고속 인터넷망 제공을 위해 향후 5년간 7억 1,700만캐나다달러 투자
- 글로벌 인재 육성,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개선, 차세대 기업가에 대한 지원, 캐나다 산림분야 혁신 및 성장 지원, 석유 및 가스 분야의 혁신 지원 등 국가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11억 2,300만캐나다달러 투자
- (조화) 원주민과 화해 및 조화를 바탕으로 둔 정책을 중심으로 원주민과의 격차 해소, 원주민 보호 및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원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원주민 청소년 및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6억 7,900만캐나다달러 지원
 - 원주민과 이누이트 아동(Inuit Children)을 위한 서비스 개선, 토착민 언어 보존,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민 공동체를 위해 향후 5년간 30억 5,100만캐나다달러 지원
- (변화) 건강과 복지, 문화 및 예술을 위한 지원, 캐나다 재향군인 및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 공정한 세금시스템에 중점 투자(FY2023-24년까지 총 54억 600만캐나다달러 지원)
 - 건강과 복지: 국가치매전략 도입 향후 5년간 5천만캐나다달러 지원, 오피오이드 중독 대응에 향후 5년간 3,100만캐나다달러 지원, 장기기증 및 이식을 위한 캐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3,700만

캐나다달러 지원 등

- 문화 및 예술 지원: 성평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억 6,200만캐나다달러 지원, 저널리즘 조직을 위한 세금공제 향후 5년간 3억 6천만캐나다달러 지원, 디지털 뉴스에 대한 세금공제 향후 5년간 1억 3,800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 캐나다 재향군인 및 가족을 위해 향후 5년간 3억 5,100만캐나다달러 지원



호주

[기타]

- 호주 통계청, 2018년 4분기 정부재정통계 발표 (2019. 3. 5.)⁶⁷⁾
 - 호주 일반정부의 2018년 4분기(December quarter) 세입(taxation revenue)은 전 분기 대비 13.4% 증가한 1,437억 900만호주달러, 총수입(total revenue)은 전 분기 대비 9.7% 증가한 1,747억 3,700만호주달러를 기록
 - 총비용(total expenses)은 1,685억 9,300만호주달러로 집계됨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는 61억 1,400만호주달러, 다시 비금융자산 순취득을 차감한 순차입(net borrowing)은 37억 5,700만호주달러를 기록

67) 호주 통계청, December Key Figures: All Levels Of Government, 2019. 3. 5.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5519.0.55.001main%20features1dec%202018>



<표 16> 2018년 4분기 정부재정통계(일반정부 부문)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2018년 9월 분기	2018년 12월 분기	전 분기 대비
세입(Taxation revenue)	126,740	143,709	13.4
총수입(Total revenue)	159,248	174,737	9.7
총비용(Total expenses)	166,885	168,593	1.0
GFS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7,638	6,114	-
GFS 순용자/차입(Net lending(+)/borrowing(-))	-13,184	-3,757	-

출처: 호주 통계청, December Key Figures: All Levels Of Government, 2019. 3. 5.

■ 호주 통계청, 2018년 4분기 국민계정 발표(2018. 3. 6.)⁶⁸⁾

- 호주 경제성장률(계절조정)은 2018년 연간 2.7%, 4분기 0.2%를 기록
 -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전 분기 대비 보건(1.9%), 의류 및 신발(2.2%) 지출이 증가한 반면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2.4%) 지출이 감소해 0.4% 증가
 -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보건, 노인 및 장애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로 전 분기 대비 1.8% 증가
 - 민간 투자는 주거부문(-3.4%) 하락을 지적재산 부문(1.8%)이 일부 상쇄하여 1.3% 하락하였고, 공공 투자는 0.3% 증가
 - 수출은 농산물 수출이 5.6% 하락하는 등 0.7% 하락한 반면, 수입은 중간재(1.4%)가 상승한 반면 서비스(-0.4%)가 감소해 0.1% 상승

<표 17> 호주의 2018년 4분기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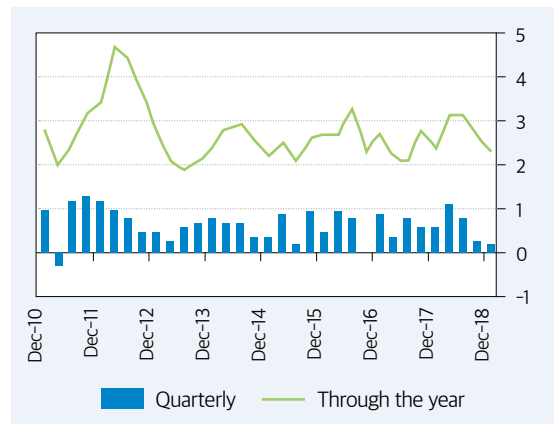
(단위: %, 계절조정)

구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8	2.9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1.8	5.6
가계(Households)	0.4	2.0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1.0	1.2
민간(Private)	-1.3	0.3
공공(Public)	0.3	4.7
재고증감(Changes in inventories)	na	na
국민총지출(Gross national expenditure)	0.5	2.5
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0.7	4.7
수입(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0.1	1.5
통계적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na	na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0.2	2.3

출처: 호주 통계청, Economy grew 0.2 per cent in December quarter, 2019. 3. 6.

[그림 7] 호주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출처: 호주 통계청, Economy grew 0.2 per cent in December quarter, 2019. 3. 6.

68) 호주 통계청, Economy grew 0.2 per cent in December quarter, 2019. 3. 6.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5206.0Media%20Release1Dec%202018>

| 정책흐름 |



■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겨냥한 적극적 재정 운영

- 4대 자원배분 중점,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집중 투자 -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 본 자료는 2019년 4월 2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에서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 제출 예정 -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세입 세출	회계 (일반· 특별 회계)	총세입(A)	359.5	385.0	25.4
		총세출(B)	342.9	364.5	21.6
		결산상 잉여금(C=A-B)	16.2*	16.5*	0.3
		차년도 이월액(D)	4.9	3.3	△1.6
		세계잉여금(E=C-D)	11.3	13.2	1.9
	기금 수입·지출	619.3	569.9	△49.4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a)	24.0	31.2	7.1	
	사회보장성기금수지(b)	42.5	41.7	△0.8	
	관리재정수지(c=a-b)	△18.5	△10.6	7.9	
국가 채무 등	국가채무(중앙정부)	627.4	651.8	24.4	
	국가채권	316.9	342.8	25.9	
	국유재산	1,075.8	1,076.6	0.8	
	물품	11.6	12.4	0.8	
재무 제표	자산(d)	2,062.5	2,123.7	61.2	
	부채(e)	1,555.8	1,682.7	126.9	
	순자산(f=d-e)	506.7	441.0	△65.7	

*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제상환(17년 0.5조 원, 18년 4.0조원) 차감

** 구성항목별 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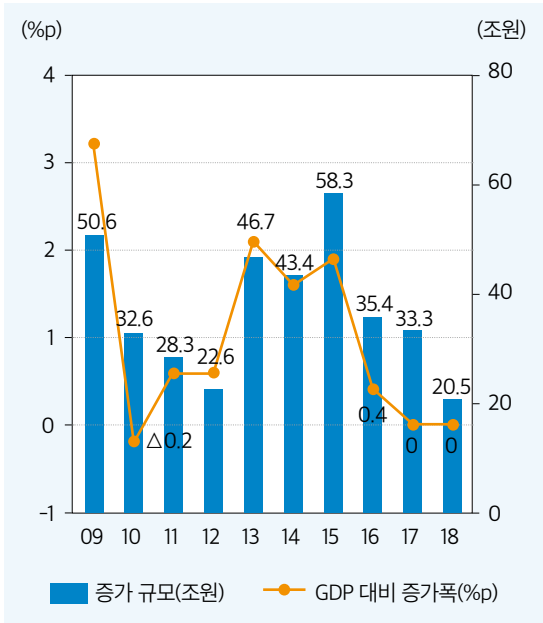
- 첫째, 재정수지는 법인 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 실적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재정수지 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13	'14	'15	'16	'17	'18
◇통합재정수지	14.2	8.5	△0.2	16.9	24.0	31.2
- GDP 대비(%)	(1.0)	(0.6)	(△0.01)	(1.0)	(1.4)	(1.7)
◇관리재정수지	△21.1	△29.5	△38.0	△22.7	△18.5	△10.6
- GDP 대비(%)	(△1.5)	(△2.0)	(△2.4)	(△1.4)	(△1.1)	(△0.6)

- 둘째,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0.5조원 증가하였고, GDP 대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보임



- 셋째, 세계잉여금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13.2조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활용은 「국가재정법」(제9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요 내용 >

1 국가결산보고서 요약

◇ [세입·세출] 총세입 385.0조원, 총세출 364.5조원, 결산상 잉여금 16.5조원, 세계 잉여금 13.2조원 발생

◇ [재정수지] 법인 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 실적 증가로 전년 GDP 대비 0.4-0.5%p 수준의 개선 효과 달성

- 통합재정수지: 31.2조원 흑자(17년 24.0조원) (GDP 대비 비율 0.4%p 개선, 전년 대비 +7.1조원)
 - 관리재정수지: 10.6조원 적자(17년 △18.5조원) (GDP 대비 비율 0.5%p 개선, 전년 대비 +7.9조원)
- ※ 재정수지는 최근 3년 연속 크게 개선되는 추세

◇ [국가채무(중앙정부)] 651.8조원(GDP 대비 36.6%)으로 전년 대비(627.4조원, GDP 대비 36.3%) 24.4조원 증가

- * 증감 현황(조원): (13) 38.9 → (15) 53.5 → (17) 35.4 → (18) 24.4
- ** 지방정부 포함 시 국가채무(DI, 잠정치): 680.7조원(GDP 대비 38.2%)
- ※ '09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를 30%대 수준 지속 유지 중이며 '13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분 시현

◇ [재무제표] 국가 자산은 2,123.7조원, 부채는 1,682.7조원, 순자산은 441.0조원임

2 국가결산보고서 세부 내용

I 세입·세출

- (총세입·총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85.0조원, 총세출은 364.5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5조원 발생

< 2018회계연도 결산 총세입 및 총세출 현황 >

(단위: 조원)

구분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상잉여금 (A-B)	차년도 이월액(C)	세계 잉여금 (A-B-C)
합계	385.0	364.5	16.5*	3.3	13.2
일반회계	316.2	299.9	12.3*	1.6	10.7
특별회계	68.8	64.6	4.2	1.7	2.5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제상환 4.0조원 차감

- (세계잉여금)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차년도 이월금)은 일반회계 10.7조원, 특별회계 2.5조원으로 총 13.2조원 발생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 자체 세입 처리 예정임

< 2018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규모 >

(단위: 억 원)

세계 잉여금	① 지방 교부세(금) 정산	채무상환		④ 세입 이입 등
		② 공적자금 상황	③ 채무 상황	
106,575	105,292	385	269	629

II 재정수지

- (재정수지) 법인 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 실적 증가로 전년에 비해 GDP 대비 비율 기준 0.4~0.5%p 수준의 개선 효과를 달성
 -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7.1조원, (GDP 대비 비율 +0.4%p), 예산 대비 16.1조원이 개선
 -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10.6조원 적자이나, 전년 대비 7.9조원 (GDP 대비 비율 +0.5%p), 예산 대비 20.9조원이 개선

*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고용보험 기금

< 2018회계연도 결산 재정수지 현황 >

(단위: 조원)

구분	'17년 결산 (A)	'18년		증감	
		예산 (B)	결산 (C)	전년 대비 (C-A)	예산 대비 (C-B)
1. 총수입	430.6	447.7	465.3	34.7	17.6
2. 총지출	406.6	432.7	434.1	27.6	1.5
3. 통합재정수지 (1-2) (GDP 대비, %)*	24.0 (1.4)	15.1 (0.8)	31.2 (1.7)	7.1 (+0.4%p)	16.1 (+0.9%p)
4.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GDP 대비, %)*	42.5 (2.5)	46.5 (2.6)	41.7 (2.3)	△0.8 (△0.1%p)	△4.8 (△0.2%p)
5. 관리재정수지 (3-4) (GDP 대비, %)*	△18.5 (△1.1)	△31.4 (△1.7)	△10.6 (△0.6)	7.9 (+0.5%p)	20.9 (+1.1%p)

* '18년 명목 GDP: (추경 시) 1,812.6조원, (결산 시) 1,782.3조원

III 국가채무 등

■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680.7조원이며, 중앙정부채무는 651.8조원(GDP 대비 36.6%)으로 전년 대비(627.4조원) 24.4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667.4조원) 대비는 15.6조원 감소

* 지방정부 포함 시 국가채무(D1, 잠정치)는 680.7조원(GDP 대비 38.2%)

● 전년 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채권*(20.3조원), 국민주택채권(3.9조원), 외평채권(0.9조원), 차입금(△0.6조원) 등에 기인

* 전년 대비 국고채권의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10.8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증가(11.7조원) 등

< 2018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 >

(단위: 조원, %)

구분	'17년 결산 (A)	'18년		증감	
		예산 (B)	결산 (C)	전년 대비 (C-A)	예산 대비 (C-B)
◇ 중앙정부(A) (GDP 대비, %)*	627.4 (36.3)	667.4 (36.8)	651.8 (36.6)	24.4 (+0.3%p)	△15.6 (△0.2%p)
○ 국채	623.3	663.5	648.4	25.0	△15.1
- 국고채권	546.7	581.4	567.0	20.3	△14.3
- 외국환평형 기금채권	7.2	7.7	8.0	0.9	0.3
- 국민주택 채권	69.4	74.4	73.3	3.9	△1.1
○ 차입금	3.8	3.8	3.2	△0.6	△0.5
○ 국고채무부 담행위	0.2	0.2	0.2	△0.0	0.0
◇ 지방정부 (B, 잠정)**	32.8	33.1	28.9	△3.9	△4.1
□ 국가채무 (A+B, 잠정D1) (GDP 대비, %)	660.2 (38.2)	700.5 (38.6)	680.7 (38.2)	20.5 (+0.0%p)	△19.8 (△0.4%p)

* '18년 명목 GDP: (예산) 1,812.6조원, (결산) 1,782.3조원

** 지방정부 채무는 지자체 결산 이후 8월경 확정 예정

■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342.8조원으로 전년 대비(316.9조원) 25.9조원(8.2%) 증가

●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의 융자회수금(12.2조원), 국민연금기금 단기금융 투자 자산 증가 등의 예금 및예탁금(9.6조원) 증가가 주요 원인임

< 2018회계연도 결산 국가채권 현황 >

(단위: 조원, %)

구분	'17년 결산 (A)	'18년 결산 (B)	구성비	증감(B-A)	
				금액	증감률
합계	316.9	342.8	100	25.9	8.2
융자회수금	142.0	154.2	45.0	12.2	8.6
예금및예탁금	122.8	132.3	38.6	9.6	7.8
내국세	35.9	39.6	11.6	3.7	10.4
경상이전수입	10.1	10.5	3.1	0.4	4.3
사회보장 기여금	2.1	2.3	0.7	0.2	8.7
기타	4.1	3.9	1.1	△0.2	△4.7

■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1,076.6조원으로 전년 대비(1,075.8조원) 0.8조원(0.1%) 증가

● 토지, 건물, 공작물 등에서 매입 등 취득, 신규등록 등으로 124.5조원 증가, 매각 등 처분, 감가상각 등으로 123.7조원 감소

< 2018회계연도 결산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 현황 >

(단위: 억 원, %, km²)

구분	'17년 결산 (A)	'18년 결산 (B)	증감(B-A)	
			금액	증감률
합계	10,757,551	10,765,968	8,417	0.1
토지	4,630,098	4,665,847	35,749	0.8
(면적)	(24,996)	(25,062)	(66)	
건물	677,188	697,432	20,245	3.0
공작물	2,821,660	2,851,978	30,318	1.1
유가증권	2,456,556	2,417,229	△39,327	△1.6
기타*	172,049	133,482	△38,567	△22.4

* 입목축,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무체재산

- (물품) 물품은 12.4조원으로 전년 대비(11.6조원) 0.8조원(7.0%) 증가
 -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4,435억원,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1,290억원이 증가,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에서 650억원이 감소

< 2018회계연도 결산 물품 종류별 증감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17년 결산 (A)	'18년 결산 (B)	증감(B-A)	
			금액	증감률
합계	116,284	124,467	8,183	7.0
전기·통신기기	28,691	29,501	810	2.8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19,254	23,689	4,435	23.0
사무용 기기·집기	22,212	23,004	792	3.6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12,618	11,968	△650	△5.2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1,766	3,056	1,290	73.0
기타	31,743	33,249	1,506	4.7

IV 재무제표

■ (재무제표) 국가 자산은 2,123.7조원, 부채는 1,682.7조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441.0조원으로 전년 대비(506.7조원) 65.7조원 감소(△13.0%)

- (자산) 2,123.7조원으로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유동·투자 자산(49.1조원), 전비품 취득에 의한 일반유형자산(10.5조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2,062.5조원) 61.2조원 증가
- (부채) 1,682.7조원으로 국공채 발행잔액(21.7조원)과 연금 총당부채* 증가(94.1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1,555.8조원) 126.9조원 증가

*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

- 연금총당부채 증가(94.1조원)는 대부분 최근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 등(79.9조원, 85%)에 기인

※ 연금총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정금액으로 '확정채무'가 아니며, 미래 연금수입(공무원, 군인의 기여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

< 2018회계연도 결산 자산·부채 현황 >

(단위: 조원, %)

구분	'17년 결산 (A)	'18년 결산 (B)	증감(B-A)		
			금액	증감률	
자산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958.0	993.5	35.5	3.7
	○ 토지·건물 등	1,104.5	1,130.2	25.7	2.3
	소계	2,062.5	2,123.7	61.2	3.0
재무제표 부채	○ 국채·주택청약저축 등	710.0	742.8	32.8	4.6
	○ 연금총당부채	845.8	939.9	94.1	11.1
	- 공무원연금총당부채	675.3	753.9	78.6	11.6
	- 군인연금총당부채	170.5	186.0	15.5	9.1
소계	1,555.8	1,682.7	126.9	8.2	
순자산(자산-부채)	506.7	441.0	△65.7	△13.0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겨냥한 적극적 재정 운영

- 4대 자원배분 중점,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집중 투자 -

* 본 자료는 2019년 3월 26일 예산실 예산정책과에서 발표한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겨냥한 적극적 재정 운영 - 4대 자원배분 중점,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집중 투자 -”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 편성지침은 부처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기로 하고,

-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재정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2020년 예산안에서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①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SOC·노후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
- 서비스·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지원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 지원

② 내 삶이 따뜻한 사회

-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
- 빈틈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고교무상교육 및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등으로 차별 없는 출발 기회를 제공

③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바이오헬스 등)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저출산 대응 투자를 늘리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④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 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등 국민 건강투자 확대
- 스마트 군(軍) 육성 및 핵심·첨단 무기체계 보강 등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

■ 국민체감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다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①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②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③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집중 투자

■ 이와 함께,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① 재량지출 구조조정, 신규·의무지출 사업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과 제고
- 특히,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하여 충당

② 조세지출 관리 강화, 특별회계·기금 재원 효율적 활용, 민간투자사업·국유지 활용 활성화 등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재원의 다변화 추진

③ 국민참여 예산 범위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으로 포용·참여 기반의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연계하여, 국가사업으로 수행하던 3.5조원 규모 수준의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 이번 지침은 3월 29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 예산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 절차, 사업유형별·목적별 편성 기준 및 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
•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참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

**기본
방향**

- 경제 선순환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 재정 운영
- 재정여력 활용 및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

**자원
배분
중점**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 상생형 일자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지원 강화
- 생활SOC, 노후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확충
- 관광 등 서비스산업·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 확대
-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발전 지원

내 삶이 따뜻한 사회

- 저소득·취약계층 소득 기반 확충 및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
- 고교무상교육,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등 차별 없는 출발 기회 제공
- 돌봄·보육·의료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 4대 플랫폼,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및 제2벤처붐 확산
-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인재 양성 및 도전적 R&D 지원 강화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선제 대응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 미세먼지 대응 등 유해환경 개선, 국민건강·안전 인프라 확충
- 남북 교류·협력 추진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반 마련 지원
- 스마트 군 육성 등 튼튼한 국방·안보태세 확립

< 3대 핵심투자 패키지 >

- ①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 ②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③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재정
운용전략**

-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전략적 지출검토 등 재정지출 효과 제고
- 민자 활성화, 특별회계·기금 재원 효율적 활용 등 재정투자 여력 확보

재정포럼

2019년 4월호 통권 제274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9년 4월 15일 발행 / 제23권 제4호(통권 제27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 인쇄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4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터넷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쉽게 얻은 정답은 진짜 나의 지식으로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식인이 되는 방법, 인터넷 검색(searching)이 아닌 독서(reading)입니다.